

제392회국회
(임시회)

국 방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1월5일(수)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43)
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85)
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87)
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56)
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30)
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37)
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31)
10.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26)
11.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11)
1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3)
14. 긴급 현안보고
15.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

상정된 안건

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3) 2
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5) 2
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7) 2
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6) 2
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30) 2
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7) 2
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9.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31) 2
10.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26) 2
11.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12.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11) 2
1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3) 2
14. 긴급 현안보고 4

15.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 32

(14시04분 개의)

○위원장 민홍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첫 국방위원회 회의인데요,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서욱 국방부장관님을 비롯한 강은호 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전 보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된 정성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국방위 활동 지원을 위해서 충실히 직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열세 건의 법률안을 처리하고 합참으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은 후에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끝나면 이미 예정된 대로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국방위원회가 2022년 임인년 첫 회의를 여는 날입니다. 올해는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 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해로 어느 때보다도 주변으로부터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될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보다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진중한 자세로 국가안보를 위해서 매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초에 탈북민이 또다시 GOP와 군사분계선의 철책을 넘어서 월북하는 사안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에게 걱정과 실망을 안겨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는 군의 경계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군무태세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는지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오늘 우리 위원회는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먼 이국땅에서 목숨을 걸고 참전하신 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제대로 보상하고 예우하고 있는지, 그런 근거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회의에는 보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서욱 국방부장관님과 함께 원인철 합참의장님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께서 출석해 계신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3)

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5)

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7)

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6)

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30)

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7)

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31)

10.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26)

11.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11)

1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3)

(14시08분)

○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

13항까지 열세 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성일종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법안심사소위원장 성일종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1년도 12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기동민 위원, 강대식 위원, 김병기 위원, 김병주 위원, 김진표 위원, 한기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였고, 심사 과정에서는 대체토론에서 제기된 내용과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안 등 2건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 중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성에 대해서도 여성과 동일한 장애기준을 적용하고 둘째, 상이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역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라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연령 규정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법률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홍철 성일종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

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에 따라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르면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완료해서 전체회의에 심사보고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기동민 의원과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3항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박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윤주경 의원과 한기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8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윤주경 의원과 권명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11항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부가 제출한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전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 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 의뢰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오늘 의결된 안전과 관련해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존경하는 민홍철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보건의료법, 한국국방연구원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방부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존경하는 민홍철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동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최종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취지를 잘 살려서 사업타당성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하여 내실 있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14. 긴급 현안보고

(14시16분)

○위원장 민홍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긴급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전동진 합참 작전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전동진 합참 작전본부장 전동진 중장입니다.

지난 1월 1일에 발생한 22사단 월북 상황과 22사단의 경계력 보강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북한 미상 발사체 상황에 대해서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사단의 월북 상황 경과와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보고에 앞서서 월북자 행적은 좌측 페이지의 요도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요도의 녹색선은 민간인 출입통제선이고 청색선은 GOP 철책이며 요도에 표시된 1번부터 3번 사항은 추후에 확인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1월 1일 토요일 12시 51분경 민통선 인근에 위치한 중대 상황실에서 군 CCTV를 통해 좌측 요도의 1번 지점에서 월북자가 민통초소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식별하였고 경고방송으로 민간인 출입통제지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월북자는 1분 후에 트럭을 운전하던 마을 주민과 접촉하였고 마을 주민이 민통선 이북으로 가지 않도록 ‘거기로 올라가면 안 돼요’라고 하자 미상 인원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후에 마을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였습니다.

12시 54분에 마을 인근의 2번 지점 일대에서 민간 CCTV에 포착된 이후의 행적은 식별되지 않았으나 좌측 요도의 2번 지점에서부터 3번 지점까지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월북자는 18시 36분 좌측 요도의 3번 지점인 GOP 철책을 통해서 월책하였고 이는 다음날인 1월 2일 01시 02분 채증된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후 1월 1일 21시 17분 MDL 이남 1.2km 일대 4번 지점에서 GOP 선상에 위치한 ‘가’번 TOD를 통해 식별되었고, 21시 17분부터 21시 44분까지 4번 지점에서 5번 지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월북자는 21시 44분에 관촬되었다가 22시 11분 MDL 이남 410m 부근의 6번 지점에서 다시 식별되었고, 이때부터 지형적인 요인으로 식별과 미식별이 반복되었습니다.

1월 2일 00시 28분 MDL로부터 북방 1.4km 이격된 8번 지점에서 관촬되었다가 최종적으로 MDL 동북방 일대 9번 지점에서 식별된 이후에는 관촬이 불가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월북자가 북한 지역에서 안내원과 만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TOD 영상을 복기한 결과 미상 인원 4명이 서북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식별하였고, 미상 인원 4명이 이동한 지 4분 후에 월북자가 동일 지점에서 미상 인원 4명과 이동 방향이 상이한 동북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때 월북자와 미상 인원 4명이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북자의 GOP 월책 시의 상황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북자의 월책 시에 감시체계 측면에서는 광망의 절곡값에 따라서 경고등 및 경보음이 발생하였고, 감시체계는 월책 지점 인근의 감시카메라 3대가 자동 전환되어 월북자를 5회 포착하고 경고등 및 경보음이 발생하는 등 GOP 과학화장체계는 정상 작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감시체계는 철책 최상단의 Y피켓에 설치된 상단감지유발기, 월책 감지로드, 광망 등에 일정 이상의 힘이 가해지거나 철책 하단의 광망이 30cm 이상 들릴 경우에 경보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함께 소초 상황실 내에 경보음과 경고등이 작동하며 상황병 모니터에 팝업창이 발생합니다.

금번 상황에서 18시 36분 감시체계의 경보가 작동하자 초동조치조인 소초장 등 6명이 광망 경보 발생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였고, 세 차례에 걸쳐 철책 이상 유무를 점검하였으나 특이사항을 식별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대대 주관하에 광

망의 절곡 상황에서 발생한 파형을 분석한 결과 파형 분석 화면에 미세한 이상 파형이 있었으나 발생 원인을 외부 요인이 아닌 시스템의 오류로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철책 주변의 족적과 철책 상단 율형철조망에 남아 있던 흰색깃털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철책 및 주변 확인이 미흡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족적은 추가적인 철책 정밀 시, 흰색깃털은 사단의 현장 확인 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시체계는 중거리 및 근거리 감시카메라로 구성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감시 구간을 설정하여 일정 시간 단위로 자동 감시하는 체계입니다. 만약 광망 경보가 발생하면 절곡 지점 인근의 감시카메라가 자동으로 전환되어 현장을 감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상황에서 18시 36분 광망 경보가 발생하자 팝업 화면이 전시되었고 소초에서는 대대 상황보고를 위한 화면을 구성하였으며 대대에서 주관하여 상황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대 상황보고를 위한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시간대에 영상감시를 하지 못하였고 일부 포착된 화면은 흐릿한 영상 및 감시 사각지역 등으로 인해서 월북자를 식별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월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시장비의 녹화영상을 복기하였지만 실제 시간과 저장 서버에 입력된 시간이 4분 34초 상이하여 시간 동기화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월책 시간인 18시 36분을 기준으로 이전 30분간의 영상을 확인해야 하나 장비에 장입된 시간이 4분 34초 빠르게 설정되어 18시 32분을 기준으로 이전의 30분을 확인함으로써 실제 상황이 발생한 18시 36분의 영상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대대 지휘통제실에서 상부 보고 없이 자체적으로 상황평가 후에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은 DMZ 내 미상 인원 식별과 관련하여 제대별로 조치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1시 17분에 TOD로 월북자를 식별한 이후 11분 만에 대대에서 사단으로 상황보고를 하였고 대대에서 합참까지는 14분 만에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해당 GOP 대대장은 작전 초기 지형과 미상 인원의 이동 방향, 아(我) GP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귀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초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대대장은 미상 인원의 수색 및 차단을 위해서 수색팀을 준비시키고 사단장 승인하에 4개 팀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였습니다. 이후 군단 및 사단과의 상황평가를 통해서 침투 및 귀순 가능성이 낮고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작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상 인원과의 이격 거리, 야간 상황, 기도비닉, 적설 등으로 인해서 미상 인원 접촉 및 차단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입니다.

현 상황 관련 긴급 작전지휘관회의를 합참의장 주관으로 실시하고, 금번 한 달 동안 군단장 책임하에 경계작전부대 임무수행 향상을 위한 특별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합참에서는 2월 경계부대의 임무수행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철치부심의 자세로 현장 작전부대 장병들의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고히 한 가운데 임무수행 능력과 체계를 조기에 확립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2사단의 경계력 보장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 2월 22사단 귀순 상황 이후에 국방통합점검단을 운용하여 22사단의 경계력 보장을 위해 추진해 온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3월 22사단 국방통합점검단 운용 결과 22사단이 작전소요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경계작전 여건이 불비하고 과학화경계시스템의 노후화 및 기능 미흡으로 과도한 오경보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먼저 경계력 보장을 위한 부대계획을 조정하여 8군단 사령부의 해체 시기를 21년 말에서 23년 중반으로 조정하였고, 22사단은 21년 9월에 부대편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사단 참모부와 정보대대 등 직할부대의 편성을 보장하고, 특히 GOP를 담당하는 2개 여단의 편성을 1000여 명 보장하였으며 해안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여단의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1대대대를 추가 편성하는 등 총 2200여 명의 인원을 보장하였습니다.

22사단 예하 여단의 책임지역은 21년 9월 부로 조정을 완료하여 GOP 경계와 해안경계 임무 중단일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단별 책임지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보장 경과입니다.

경계력 보장을 위해서 근거리감시카메라 11대를 작년 5월 추가 설치하였고, 올해는 노후 감시카메라 20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AI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과기부 및 방사청과 협업하여 신속시범획득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21년 귀순 상황 발생 이후 해당 지역 인근 6개소(6km 구간)에 AI를 적용한 과학화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5개소를 설치하였고, 올해 2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능개량사업을 시행하여 22사단 전 GOP 지역의 노후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교체 등을 내년까지 추진하겠고, 향후 전 GOP 지역에 과학화경계시스템을 26년까지 보장할 계획입니다.

군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들께서 우리 군을 신뢰하실 수 있도록 군 본연의 임무 완수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2사단의 경계작전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에 북한에서 발사한 미상 발사체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북한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현재 포착된 제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적극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F-35A 상황은 보고 안 합니까? 이따 질의 시간에 보고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긴급현안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까.

질의 순서는 이미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일단 5분 정도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일종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도 그러시고 합참의장님도 그러신데, 지금 군에 어떤 비상적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언론 발표와 거의 동시에 국회로 통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계신데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한테는 그래도 언론에 발표되기 1시간 전이고 2시간 전이고 알려 줘서 각 방에서도 내용을 공유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군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서 언론에 발표하기 10분이나 5분 전에 통보 전화 한 통을 하고 바로 나가요.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계시지만 위원장님한테는 몇 분 전에 보고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국회가 그렇게 간단한 곳입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국방부를 비롯해서 군 관계자들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국회를 뭘로 아는 거예요? 국회가 언론하고 동시에 안다고 그러면 여기 의원들이 왜 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바로잡아 주시고요. 이 부분은 기동민 간사하고도 얘기를 나눈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이렇게…… 군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도 가능하면 존중하고 국방부나 합참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잘못된 그런 관행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 경고해 주시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언론에 나기 전에 국회가 먼저 알고 대책도 고민하고 각 당도 또 수뇌부도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홍철 질의……

○성일종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의사진행발언 하시고 그다음에 질의하십시오.

기동민 간사님.

○기동민 위원 성일종 간사님이 말씀을 주셔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야당이니까 보고를 안 하는 것 아니냐, 일부러 늦게 그러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도 전화받은 게 한 1분 전에 받아서 너무 섭섭해하

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보고하지 마십시오. 그건 보고가 아닙니다. 국회가 아무리 국민의 지탄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기관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쓸데없는 걸 보고해서 그게 전체 언론에 새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불안감과 불신감을 야기시키는 게 국방부의 행태이기도 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리기 한 10분 전 이런 정도에 똑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주는 게 무슨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의기관인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보고는 앞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보고 안 해도 좋으니까 일을 똑바로 하십시오. 앞으로는 보고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민홍철 저희 위원회에서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위원장한테는 한 2시간 전에, 저도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양당 간사님들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당 간사님들의 지적을 국방부장관께서는 깊이 있게 유념해 주셔서 이런 사안은…… 물론 모든 사안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국회에 최소한 알려 줘야 되겠다, 보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안은 가급적이면 이른 시간 내에 이렇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국방부장관 서욱 위원님들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그래야 같이 대비할 수 있고 때로는 목소리도 같이 낼 수 있고 또 보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니까 그것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그러면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합참의장님, 12시 51분 군의 CCTV 카메라에 월북한 사람의 모습이 포착됐었지요?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예, 12시 51분은 민통선에 접근하고 있는 민간인이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것만 단답으로 해 주세요.

민통선에서 포착이 됐었고 그래서 방송을 했고, 그 이후에 사각지대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확인

을 못 했지요?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 이후에는 정부에서 설치해 놓은 CCTV 카메라에 발견이 됐지요?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예, 민간 CCTV에 관측이 됐습니다.

○성일종 위원 민간 CCTV가 어디 겁니까?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마을의 민간인 자택에 있는 것입니다.

○성일종 위원 민간인 것에 됐다?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예.

○성일종 위원 그러면 군 것 이외에 여기 고성군 것은 없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예, 개인용 카메라에 잡힌 것입니다.

○성일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북자가 철책을 뛰어서 넘어갔잖아요. 그때 경고음이, 사이렌이 다 울렸지요?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예, 정상 작동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그 소대가 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사이렌 울린 지점으로부터 소대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405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400m, 여기 6분 내 도착했다는 거지요?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예.

○성일종 위원 6분 내 도착했는데, 원래 400m를 6분 내 도착하면 됩니까?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이것은 실제 상황일지와 또 현장 CCTV를 다 확인한 사안이기 때문에……

○성일종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와서 보고를 하길래 다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다 보고를 받으시고 정리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400m 거리를 소대에서 출동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6분이 걸렸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6분이라고 하는 게 적정한 시간인가……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그 시간은……

○성일종 위원 400m를 6분 내 가는 것 보셨나요?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그 준비되어 있는 인원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출동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절차를 지켜서 6분……

○성일종 위원 그 소대에 대기하고 있었던 소대

원들이 몇 명입니까?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소초장 포함해서 6명이 현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런데 원래 400m이면 몇 분 안에 가게 되어 있어요?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최단 시간 내에 가게 되어 있고, 실제로 그 지형을 보면 약간 내리막이고 빠른 걸음으로 갔을 때 6분이면 도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도착했었을 때의 에비던스(evidence)가 다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장에 6분 내 도착을 했잖아요. 6분을 정확하게 확인했는가, 군이?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예, 확인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뭘 확인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이번에 전비태세검열단이가서 상황일지 그다음에 그 현장을 확인하고……

○성일종 위원 상황일지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요.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그래서 CCTV도 같이 확인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CCTV에 6분 내 정확하게 온 것을 확인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예, 확인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일종 위원 또 월담을 했단 말이지요. 그게 이중철책이지요?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중철책인데, TOD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GOP 대대에서 관리하는 장비에 TOD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TOD 장비 운용하고 관측하는 병사의 소속이 대대입니까, 소대입니까?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그건 대대입니다. 대대에서 운용하는 것은 대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같은 대대 내에서, 말단으로 보면 소대에서 6분 내 도착을 했고 그 이후에 TOD를 가지고 관측해서 식별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 소대에서 경보음이 울려 가지고 현장으로 출동을 했고 이상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TOD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월남하는 줄 알고 작전을 폈다는 거잖아요?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지금 잠깐 상황 설명을

다시 드리면……

○성일종 위원 아니아니, 제가 설명을 하는 것에 답변만 하시면 돼요.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그러니까 상황 설정이 지금……

○성일종 위원 그러면 소대에서 일어난 상황을 중대에서 알았을 거고 대대에서 알았을 거예요, 이상 징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소대는 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아까 보니까 제대로 점검을 못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상 물체 발견해서 사이렌이 울렸고 그리고 대대까지 보고가 됐는데 TOD로 이게 나왔단 말이지요.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그 시간에는, 월책하는 당시에는 TOD로 관측된 것이 아니고 광망이 울렸기 때문에 광망에 의한 감지시스템 그다음에……

○성일종 위원 시간차는 있어요.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예, 카메라에 의한,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것이고 TOD는 그 장면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TOD는 DMZ 안에 들어가서……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렇지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한 것 관측을 했잖아요. 소대에서 비상벨이 울렸고 그 이후에 한참 뒤에 TOD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대대장의 현장 판단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말씀하신 대로 18시 36분에 월책을 할 때는 중대 상황실에서 광망과 또 카메라에 포착된 그것으로 인해서 경보음이 울렸고 거기에 따라서 소초에 있는 인원들이 현장에 가서 철책을 점검했는데 이상 상황을 발견하지 못했고, 중대 상황실에 있는 CCTV 상황병도 그때 다섯 번이 포착이 됐지만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다시 복기를 해 봤지만 시간 오차 때문에 그 상황도 발견하지 못했고……

○성일종 위원 지금 카메라가 현장에 3대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3대의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것이고요.

○성일종 위원 3대의 카메라 있는데 하나는 흐릿했다 그 얘기고, 하나는 아예 인식을 못 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됐었던 거예요?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다섯 번 포착된 것은 일부 그런 상황들은 있었지만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영상이 다섯 번 정도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성일종 위원 그러면 그 영상을 보고 몇 사람이 회의하고 판단해서 ‘아, 이것은 월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누가 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중대 상황실에 있는 상황팀들이 그것을 다 확인하고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상황을 대대 상황실로 보고를 합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그런 판단을 내렸지요?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일단 철책 점검에서 이상 징후를 확인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확인할 때 실시간에 그 포착된 것을 상황 관리병이 보지 못했고 다시 그것을 되돌려 봤을 때 시간 동기가 4분여 초가 틀려져서 실제 그 장면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녹화된 앞의 장면을 보다 보니까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지금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철책선을 사람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2~3m가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이게 경보음이 울리는데 사람이 안 보였다는 게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봐도 그 사람들 판단이 맞다고 보십니까?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그 현장에서 조치하는 인원들이 조치를 적절하게 못 한 것입니다.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대대 상황실에 보고가 됐고 대대 상황실에서 그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위 제대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 이후에 그 카메라를 신식 카메라로 확인해 보니까 월담하는 것이 보였지요?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예, 그것은 이 상황이 벌어지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그런 상황들을 점검해 보라는 지시를 했고 그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날 늦게……

○성일종 위원 그러니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두 번째, 현장에 6분 만에 출동했던 이 소대가 과연 제대로 이 현장을 파악을 했는가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이런 상황이 대대하고 함께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몇 시간 뒤라 하더라도 TOD의 이런 상황을 월남작전을

했다고 한다면 지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군이.

다시 경계태세를 조이고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가지고 예하부대에 하달하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 일단 아무리 일이 벌어졌더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두 가지 상반된 사건에 대해서 여쭙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금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22사단 월북 사건과 또 하나는 F-35A 동체착륙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22사단 월북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비난이 있을 겁니다. 비난 충분히 받으시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시고 보강해야 될 것은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여쭙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22사단장 처벌하실 겁니까? 부임한 지 지금 10일밖에 안 됐지요?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예, 일주일 정도 만에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현장조사 결과 또 그런……

○김병기 위원 이게 소위 운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강을 하는 것은 보강을 하는 겁니다. 과학 장비에 의해서 보강을 할 수 있는 것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부족했던 것 보강해야 됩니다. 그거와 이 지역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랑은 다르거든요. 이 지역에 그러면 그런 월북 사건이라든지 월남 사건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인력보다 네다섯 배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인력을 투입하시겠습니까? 장관님, 투입해야 됩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

○김병기 위원 지금부터 해 봤더니 여기는 다른 데랑 달라 가지고 1개 사단 병력을 더 투입해야 된다, 그래야 이것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면 1개 사단 병력을 투입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지금 지난번에 작전본부장 보고가 있었지만 정밀점검을 했는데……

○김병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구조적으로 될 수 없는 거면,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도발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뚫렸다 그러면, 우리가 그 경계를 하는 이유 있지 않

습니까? 여기를,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90% 정도를 막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북한의 구조적인 도발, 전쟁·전투, 국지적인 도발은 충분히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적어도 이 정도로 막는 거라면 우리가 투입 대비, 인력을 지금 무한정 투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력 투입 대비, 과학장비 투입 대비 이 정도에서 방어를 하는 게 최선이다. 다른 지역이 예를 들어 100% 막을 수 있는 지역이라면 이 지역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90%를 막는 게 최선의 지금 막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목표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변론입니다. 이번 것에 대해서 부족했던 것은 보강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의 지휘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걸로 이 문제를 계속 때울 거냐?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운 좋으면 빠져나가고 운 나쁘면 죽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그것을 국민들한테도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쪽을 갖다가, 이쪽의 인력이 설사 이 정도 뚫린다고 해서 이렇게 큰, 이게 뚫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보에 극단적인 위협이 가해지지 않는 지역이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으면 하셔야. 그게 안 되면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거고요. 그 말씀 하나 일단 반드시 드리고 싶다.

반대로 F-35A에 대해서 여쭙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칭찬 일색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군이 많은 칭찬 받으시고 그리고 매 뉴얼대로 아주 숙련된 조종사라고 그러대요? 합참의장님께서 공군 출신이시니까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이 비행기가 10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 1000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숙련된 조종사가 더 값진 겁니까?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조종사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위원 그렇지요. 이 조종사가 칭찬은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가족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비행기를 갖다가, 물론 지금 같은 매뉴얼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공해상의 바다가 가까웠다면 바다에 비행기를 버리고 본인이 살아남아야지요.

몇 년 전에 샌디에이고에서 미군이 훈련 도중에 비행기가 민가에 추락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 제일교포 가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탈출을 한,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탈출한 조종사가 처벌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비난을 받았거나 그랬다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비행기에서 탈출하는 게, 문제가 생기면 비행기에서 탈출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민가로 물론 떨어지면 안 되겠지요. 그 비행기를 지금 같은 상황에는 최대한 다른 데 쪽으로 몰아서 다른 지역 쪽으로 가져가 가지고 하고 조종사가 생활하는 게 먼저지……

예를 들어 지금 군 문화가 ‘네 목숨 비행기와 함께, 전투기와 함께’ 이런다면 언젠가는 이 매뉴얼대로 하다가 아까운 조종사가 순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문화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강요하지 마셔라. 그 매뉴얼대로 했다 하는 것 분명히 칭찬받고 정말로 그 조종사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정말 숙련되고 이 과정에서도 침착하게 한 것 정말 존경하지만 그거와, 다음에도 네 목숨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이것을 시행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세계 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세계 최초가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고 세계 최초가 될 정도로 굉장히 훌륭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한번 봅시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왜 세계 최초가 우리나라에 왔을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비행기를 갖다가 혹시 버린 것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예,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종사들이 판단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 수단으로 해 볼 수 있다라고 그 매뉴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가지고……

○김병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해 볼 수 있다’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김병기 위원 전쟁 때 이럴 때 이관사관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 상반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시각을 군에서 바꿔 주셔라. 그리고 당당하게 그것에 대해서 언론 또는 국회 이런 데에다 말씀하셔야 된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장관님은요?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예, 어제도 옵션이 2개인데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옵션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을 때 의장하고 저하고 같이 전투통제실에 앉아서 그런 결심을 한 조종사한테, 조종사 판단을 존중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요. 잘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매뉴얼 손을 볼 것은 없는지 어떤 조치가 우선되어야 되는 건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河泰慶 위원 오늘 새벽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그렇습니다.

○河泰慶 위원 국방부가 거기에 대해서 공식 규탄 성명을 냈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그렇지 않고 NSC에서 통합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河泰慶 위원 저는 그게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NSC 입장은 주로 청와대 대통령 입장이 반영될 것 아닙니까? 외교·안보 부처가 다 모이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어떤 임기, 정무적 목표 이것이 우선시돼서 발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하다’…… 당했는데도, 얻어맞았는데도 아주 국민들이 보면 안보를 중시하는 그런 입장이 안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청와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NSC 입장도 NSC가 통합해서 그런 입장을 내는 게 좀 부적절했다고 보고, 청와대가 입장을 내고 국방부는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입장을 내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포기하셨어요. 그것은 좀 국방부장관으로서 안보에 대한 책임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그런 말씀 해 보셨어요? ‘국방부랑 청와대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입장을 내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했나요?

○국방부장관 서욱 그간에 미사일 상응조치를

하면서 통합된 메시지를 내왔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미사일의 종류나 어떤 이런 것에 따라서 좀 판단을 달리 해 볼 건데 이번 상황에서는……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항상 그랬다는 말인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河泰慶 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죽 그랬다는 말인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통합된 메시지로 항상 해 왔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러면 저는 고쳐야 될 거라고 보고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작년 10월 달에 SLBM 발사 때 “발사를 ‘도발’이라는 단어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위협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도 도발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나요?

○국방부장관 서욱 지금 저희는 거기에 용어를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 좀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과 영토·영해·영공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도발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도발에 대한 마땅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군사집단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군사 도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군사적 위협’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 미사일 방향이 저희에 위협을 가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도발로 성격을 정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河泰慶 위원 그러면 도발의 개념은 우리 헌법 상으로는 대한민국이 북한까지 포괄하지만 어쨌든 남한으로 국한해서 NLL 이남이나 그 영해 영공에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런 경우에만 한정해서 도발이다……

○국방부장관 서욱 예,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 이번 것과 거의 똑같은 경우에도 도발이라고 규정해 왔었던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요.

○河泰慶 위원 칠십칠 번 있었어요, 가끔이 아니라.

그것은 다 잘못된 거네요?

○국방부장관 서욱 군사집단에서 하는 메시지는 저희는 그렇게……

○河泰慶 위원 국방부에서도 그랬어요. 도발이라고 했었어요, 쪽.

○국방부장관 서욱 그게 간혹 한두 번 나간 것은 있었는데 대체로는 저희들은 그것을 도발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다. 왜냐……

○河泰慶 위원 잘못된 거다?

그러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한 것도 미국이나 다 도발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네요?

○국방부장관 서욱 우리 통합방위법을 그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아니고요. 통합방위법은 저희 법규 아니겠습니까?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 도발이라는 개념이 단어인데 글로벌하게 동일한 개념을 써야지 우리는 다른 개념으로 쓰고 미국은 또 다른 개념으로 쓰고, 한미 안보동맹사에서 헛갈려서……

○국방부장관 서욱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정한 것은……

○河泰慶 위원 많은 국민들은 김영정이 도발이라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했다고 국방부장관이 눈치 본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국방부장관 서욱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도 그런 것 눈치 보는 사람은 아닌데요. 저희는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그다음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유엔안보리 위반한 건데도? 지금 유엔안보리 위반한 거잖아요, 안보리 결의 위반.

○국방부장관 서욱 그렇습니다. 안보리 위반하고……

○河泰慶 위원 그래서 유엔에 대한 도발이다……

○국방부장관 서욱 유엔은 그렇게 생각할 수……

○河泰慶 위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고 대한민국도 그 국제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이다……

○국방부장관 서욱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늘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런데 도발이라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정한 것은……

○河泰慶 위원 또 억지를……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장관 서욱 저희가 용어를 정하고 통합방위법규에 정하고 그것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저희가 나름대로 정하고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과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河泰慶 위원 1분만 더 쓸게요.

○위원장 민홍철 정리하세요.

○河泰慶 위원 아무튼 저는 그 부분은 나중에 장관께서 반성해야 될 점으로 남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안보고한 철책 월북 사건. 작년 2월이지요 해엄 귀순 때 알람 경보, 경보가 양치기 경보보다, 너무 많이 울린다, 새가 날아가도 울리고 낙엽이 떨어져도 울리고 그래서 하루에 CCTV 하나당 1시간당 한 열 번, 한 초당 9대가 있으니까 그러면 1시간당 구십 번 알람이 울리면, 경보가 울리면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는 것을 분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라고 했어요. 그때 고쳤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어때요?

○국방부장관 서욱 아닙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고쳤는데 장비를 완전히 새로 깔지 않고, 고치지는 않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河泰慶 위원 프로그램의 문제잖아요, 장비의 문제가 아니고.

○국방부장관 서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감도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민감도를 최적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현장에서 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것보다 훨씬 많이 상태가 좋아졌는데 이번에 알람 울린 것은 그런 알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감시장비의 카메라에서 알람이 울리는 것하고 감지센서에서 알람이 울리는 것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것은 감지 센서에서 알람이 울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주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고……

○河泰慶 위원 철조망에서?

○국방부장관 서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지기에서 알람이 울리면 카메라가 그쪽 방향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런 시스템 하에서 울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다……

○河泰慶 위원 CCTV 알람 개선은 어느 정도 했는지 따로 보고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안규백 위원 전동진 작전본부장님, 오늘 아침에 자강도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자강도는 작년 9월 28일 날 ‘화성-8’이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곳이지요? 그때 당시는 마하 1.3~1.8 정도로 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사체를 시험했던 곳인데 오늘 발사한 것은 그 성능 개량을 해서 발사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약 3~4개월이 지났는데?

○위원장 민홍철 앞으로 나오셔서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안규백 위원 시간이 짧은데요.

○위원장 민홍철 그 시간 빼 드리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전동진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서 섬세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작전본부장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한미까지 들먹일 필요 뭐가 있어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전동진 분석한 결과를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래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전동진 예.

○안규백 위원 시간 때문에 다음에 얘기합시다.

의장님, 지금 22사단 사건이 약 1년 여간에 월북과 월남이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의장님께서 22사단 철책을 직접 방문하셨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예, 저도 이번 상황이 발생했던 지역에 6월 1일 날 실제 OP와 철책을 또 GP를 다녀왔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랬습니까? 다행입니다.

대한민국 최전선 창끝부대의 군 기강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표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남북 사이가 이렇게 왕래가 자유로워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해 보면 ‘22사단에 가면 이산가족도 자유롭게 상봉할 수 있다’ 이런 지경으로까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제작년 11월 달에 22사단으로 귀순한 사람이 올해 첫날 22사단으로 다시 또 월북을 했습니다. 경계작전의 총책임자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십시오.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위원님 말씀대로 군사대비태세와 또 경계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합참의장

으로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들을 해 나갈 약속을……

○**안규백 위원** GOP 철책을 넘을 때 광망 경보가 울렸고 CCTV에 월책이 찍혔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번에 CCTV를 보지 못했는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광망 경보가 울리면 주변의 CCTV가 자동적으로 그쪽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번에는 그 인근에 있는 3대의 CCTV가 알람과 함께 그 지점을 향했지요?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예.

○**안규백 위원** 더더구나 CCTV가 병사가 보고 간부가 보고 또 장교가 보고 또 GP에서 보고 이중 삼중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병사 1명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근무했던 전 장병들이 이렇게 해태했던 것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중대 상황실에서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요원들이 그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물론 그 지역은 아주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격오지 지대고 또 다른 지역보다는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오작동이 많은 부대인 것은 우리가 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특별히 더 관리를 해야 되고.

지난 사건이 있는 이후에 다른 부대는 감편하는데 거기는 또 증축도 다 했고 이른바 과학화경 계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가 다 지금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가?

저는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망각의 기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신교육 훈육을 시켜야 된다’ 장관한테 누누이 이야기를 했고 의장한테도 누누이 이야기했고 합참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잘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경계작전에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장비와 시설 그다음에 교육 훈련인데……

○**안규백 위원** 그리고 육군 차장은 어디 계세요? 도대체 이런 초급 장교들 교육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안 장군님, 1군단에 있다 오

셨지요? 아닌가요?

○**육군참모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교육 훈련을 시킵니까? 후속 조치도 보니까 이 보고가 아주 엉망이에요. 초동 조치만 잘했다라면 이런 일이 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고 초급 장교가 거기 가서, 소초장이 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부에 보고도 않고 전결로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상 징후가 있으면 상급부대에 바로바로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황당한 점은 소초장이 지통실이나 중대장, 대대장한테 보고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게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소초장은 중대 상황실에 보고를 했고 중대에서는 대대 상황실까지는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대 상황실에서 전체적으로 현장 출동 결과 이상이 없고 카메라 확인 결과 이상이 없다라는 보고를 받고 대대 지통실에서 상황을 종결한 것입니다.

○**안규백 위원** 제가 국방일보를 봤을 때 장관께서 피스아이(Peace Eye)에 탑승해 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라’라고 한 신문 기사를, 국방일보를 아침에 보고 장관이 추운 데 가서 고생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했는데 그 일이 있자마자 몇 시간 만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유구무언입니다.

○**위원장 민홍철** 마무리하시지요.

○**안규백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정상적인 군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앞으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 우리 군의 진단을 다시 한번 해 보고 CCTV 하나만으로, 이 CCTV 하나만 가지고서 경계작전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직접 경계를 하는 것으로 반반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생각을 해 보고, 기상천외한 발상일지는 모르지만 합동성 차원에서 해병대도 같이 경계작전을 시험 삼아서 한번 해 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임무 요원들의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대북 통지문 문구를 한번 누가 읽어 주십시오. 두 번 통지문 보냈지요? 대북 통지문 문구를 한번 읽어 주십시오, 누가 가지고 있으면.

○국방부장관 서욱 갖고 있지는 않은데 아주 간단한 문구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북으로 간 우리 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변 안전보호를 요청합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한기호 위원 제가 대북 통지문에 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게 그러면 간첩이 넘어가도 똑같이 보내겠네요?

○국방부장관 서욱 저희가 처음에 간첩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서……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군인들이 철책 비무장지대 안에서 중앙분계선을 넘어가는데 그것이 간첩인지 아닌지 우리 현역군인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북 통지문을 보내서 보호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간첩이라는 것이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제가 봐서는 국민들 많은 사람들도 이 사람이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잖아요. 그런데 간첩 잘 가니까 받아 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군의 이런 태도 자체가 이미 경계를 하겠다는 마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통지문을 보낸 것은 누가 승인했습니까, 그 통지문에 대해서? 의장이 하셨습니까, 장관이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제가 승인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국방부장관 서욱 지난번에 좀 교훈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한 건데요.

○한기호 위원 제가 그 통지문을 보냈다는 자체가 이미 경계를 포기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2012년도 노크 귀순한 후에 18년도 군사합의를 하고 지금 4건의 월북 월남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GP에…… 철수한 GP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 GP가 하나의 고지 꼭대기에 있으니까 밤에 그것을 기점으로 갈 수 있는 저명한 지형지물이지요? 분명한 거 아니예요, 하여튼?

그러면 마주 보고 있는 적 GP는 어떤 GP입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거기 역시 철수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 GP는 김일성이라도 다녀갔고 김정은이가 다녀갔고 김정은이는 여기서 화력시범 지휘까지 했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일성이라도 다녀가고 김정은이도 다녀가고 이곳에서 화력시범을 지휘했던, 김정은이가 지휘했던 GP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GP인데 우리 GP를 철수했어요.

철수한 GP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2019년도에 국방위원들이 현지에 방문했을 때 고왕산 대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GP가 철수됐기 때문에 이제는 GP에서 관측하던 것을 GOP에서 말아야 됩니다. GOP에서 말하려면 MDL 선상에 관측되는 지점이 2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고왕산 대대장이 2019년도에 얘기한 겁니다. 국방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들은 그대로의 얘기입니다. 이게 남북 군사합의에 의해서 GP를 철수한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국방백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국방백서에 써 놓기를 ‘모든 공간 무력충돌 방지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했다’…… 평화지대화해서 간첩이 들락날락하게 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간첩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그런데요……

○한기호 위원 간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국방부장관 서욱 간첩인지 아닌지……

○한기호 위원 넘어올 때는 넘어와서, 그 지역에 또 넘어갔는데……

○국방부장관 서욱 그래서 그것은 적 GP와 아 GP가 하나씩 철수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기호 위원 아니지요. 적 GP는 지금 몇 개가 남아 있냐면 3개가 남아 있어요, 동일한 지역 내 우리 지역에는 하나도 없고. 좌측 GP하고 거리가 3km입니다. 우측에 동해안까지 GP가 없어요. 양쪽을 합치면 약 6km 내지 7km입니다. 6km 내지 7km에 우리 GP는 하나도 없고 적 GP는 살아 있는 게 3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다가 3개로. 그러고도 그 GP 옆에 전방 갱도진지가 하나 또 있어 가지고 1개 소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은 네 군데 있는데 우리는 한 군데도 없어요.

○국방부장관 서욱 어차피 GP 비율이라는 게 애초부터 안 맞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적의 GP는 우리 GOP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GP하고 적 GP를 같은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일단 철책에서…… 그때 당시에 고왕산 대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GP가 없기 때문에 철책에서 모든 경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GP에 있는 감시카메라를 약 20m 높은 폴에다 설치해서 경계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 설치돼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각지점들에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다 해 놔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북한에서도 다 보여요, 20m로 설치했기 때문에 폴대가 높아 가지고. 그게 보안에 저촉되는 사항도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서욱**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지금 또 뭐가 있느냐? 올 때도 철책을 뚫고 온 것이 아니라 넘어서 왔어요. 갈 때도 넘어서 갔어요. 그러면 우리 철책이 Y피켓 위에 윤형철조망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으면 그 Y피켓과 윤형철조망의 형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넘나들 수 있는 철책이니까 일반 펜스 설치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옷이 걸려 가지고 거기에 오리털인지 담털이 묻었다는 것밖에? 그러면 근본적으로 철책 자체의 형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넘어 다닐 수 있으면. 이것도 검토를 해야지요.

그다음에 또 현장에 갔을 때, 그날 눈이 얼마 왔어요? 눈이 몇 cm가 쌓여 있어요?

○**위원장 민홍철** 정리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눈이 12월 24일, 25일 어간에 한 60cm 가까이 왔다가 일부 녹고……

○**한기호 위원** 아니에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 현장에도 눈이 있어요.

○**국방부장관 서욱** 있는데……

○**한기호 위원** 철책을 넘어서 북쪽으로 발자국이 찍 나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 출동해서 본 사람들이 뭘 봤냐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서욱** 위원님, 그게 완전하게 눈으로 다 덮인 것이,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그런 형상은 아니고요.

○**한기호 위원** 북쪽에는 사람이 한 번도 밟지 않았어요. 그래서 흔적이 보이거든요.

○**국방부장관 서욱** 제가 사진도 보고 다 확인했는데 일부 녹은 데도 있고 눈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철책, 북책 전방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소대장이 경험이 부족해서 못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기호 위원** 이제 이 GP에 다시 병력을 투입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서……

○**한기호 위원** 무슨 다른 대책을 강구해요, 이 GP를 철수하고 나서 지금 MDL 선상이 20%밖에 안 보이는데? 9·19 군사합의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경계를 무너뜨렸고 준비태세를 망친 겁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아무래도 카메라 설치 이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카메라 설치 이후하고 비교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한기호 위원** 아무리 과학화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누가 보냐면 사람이 보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서욱** 물론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요.

○**한기호 위원** 정보음이 울렸고 실제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정보음이 울리고 경광등까지 깜빡거렸는데 거기서 실시간에 아무도 관심 없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서욱** 제가 사실은 꽤 많이 안타까워서 일일이 병사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까지 다 확인했는데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기호 위원** 또 하나 두 번째, 현장에서 월북해서 가는 것을 ‘월남하는지 월북하는지 헷갈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무장지대 안에서 조명탄을 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명탄을 쏘어야지요.

그다음에 방송 전부 다 철수해서 방송도 못 하잖아요. 비무장지대 안에서는 경고방송도 못 했어요.

○**위원장 민홍철** 정리해 주시지요.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월북자가 간첩일 경우 사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이따 하시지요.

○한기호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까.

○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동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아침에 북한이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그렇습니다.

○기동민 위원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네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기동민 위원 문제인 정부는 종전선언 추진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아끼고 있지 않은데요. 지난달 29일 외교부장관이 ‘한미 간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공감하고 있고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서도 이미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어야 될 것은 대화의 문이지 다시 대결의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의 빗장을 걸어 잠근 채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시위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상화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김정은 위원장 역시 이미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서 관심과 의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쏘아야 할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대화의 신호탄이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 차원의 별도 입장표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쿵가루 집안 아닙니다.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NSC, 청와대와 격론을 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외적인 메시지는 통일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여정 눈치 보는 것 아니냐?’, 참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오로지 5000만 국민의 눈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적대와 공존의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도발이다 뭐다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부 당국자의 말 한마디는 아까 말씀드렸던 측면에서 공존과 적대의 양 측면을 동시에 관리해야 되는 엄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일각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GP 철수가 이런 경계 실패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면 2012년 10월 당시에는 일명 ‘노크 귀순’ 이런 게 있었는데 GP가 없어서 일어난 일입니까? GP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경계작전을 마련하면 되는 문제이지 이번 사건의 원인이 마치 남북 군사합의에 있는 것처럼 인과관계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건강부회하는 주장이다, 무책임한 정치공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22사단에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금방 말씀드렸던 노크 귀순, 2020년도 11월의 월책 귀순, 해엄 귀순 등 경계 실패가 끊이지 않고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익숙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국민들은 이상하실 것 아닙니까? 책임 구역이 전방 육상에 한 30km, 해상에 한 70km, 100km에 달하는 것을 사단 병력이 맡고 있는 거지요. 사실상 귀순 혹은 월북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생활하고 있는, 경계하고 있는 부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계 실패의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데 이제는 그러기에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냐,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계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지휘관의 문제가 아니라면 현직 지휘관이 사태를 수습하고 개선책을 만들도록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해당 작전지역을 완전하게 숙지하고 이에 부합하는 경계작전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화경계시스템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듯이 인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오로지 여기에 온전하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22사단에 수많은 병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면 100km의 책임 구역 이것을 계속 22사단한테 맡기는 게 현명한 거냐,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육상과 해상을 나누어서 군에서 전담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다른

기관에서 전담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본격적인 토론이 필요한 시기 아니냐,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언제까지 이런 시한폭탄을 안고 생활하려고 하시는 건지, 국민들께 보고드리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이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인들만 얘기해서 대책들을 수립한다고 하는 게 지금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심리적 영역이나 인지적 영역 등 다양하게 열어 놓고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광범위하게 청청하고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전비태세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예를 들면 위기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분석과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조직적 차원에서는 전방 경계는 22사단이 계속 맡는다 하더라도 해안경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것이 저는 효율적인 역할 분담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합니다. 해안경계 문제를 해경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아주 오랜 시간 검토를 해 오고 있는데 그것 역시 안보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고 또 해경으로 넘겼을 때 해경의 조직 문제, 예산 문제 이런 것까지 같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장관님, 합참의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계에 실패한 군인에 대해서 만약에 지휘 책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계근무태세 방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엄격하게, 엄중하게 질책하시고 페널티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가미된 문제인데 개인의 귀책사유로만 이렇게 전가해 버리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군인의, 아니면 국방부의 책임 있는 태도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차원에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껴 봅니다. 저도 물론 질타합니다, 경계 실패라고. 그런데 그렇게 목청껏 외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장관님 그리고 합참의장님,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신중하게 토론해서 이런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허심탄회하게 보고하고 대응책들을 같이 만들어 내고 경계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설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몇몇 지휘관 혹은 병사들의 근무태만의 문제라든지 사기의 문제 이렇게 규정 짓고 몰고 가고 책임을 묻는 것은 비겁한 생각이 든다,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구조적 접근과 더불어서 군의 사기 문제들까지 동시에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후속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김민기 위원 용인율의 김민기입니다.

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월북한 사람은 과거에…… 과거가 아니지요. 14개월 전에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동해안까지 온 다음에 동해안에서 22사단을 넘어서 왔던 사람이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추정이 아니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답변도, 작년에 질의응답할 때 이렇게 답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얘기를 했지요, ‘이 22사단이 북한에서 소문난 것 아니냐, 경계가 허술하기로’. 그러니까 서해안 쪽에서 자전거 타고 와서 굳이, 1사단 앞으로도 가고 5사단으로도 가도 되는데 22사단으로 온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질의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14개월 만에 다시 22사단으로 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김민기 위원 이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여태까지 왜 하필이면 22사단이나, 물론 22사단이 경계 실패한 것을 제가 지금 쫓 갖고 있는데 이것을 다 읽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사실이니까요. 언론에서도 많이 봤던 내용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제가 짚어 볼게요.

경계시스템에서 소리가 났단 말이지요. 소리가 나서 소대장과 5명의 병사가 출동을 해서 수색을

했어요. 수색에서 발자국이나 오리털 이런 것을 보지는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니터를 본 병사는 또 책임자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TOD로 영상이 잡히니까 알았어요. ‘여기서 넘어간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넘어간, 월책을 그 모니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대대에서, 상황실에서 그냥 상부 보고 없이 종결을 했고요. 종결하고 나서 나중에 ‘어, 이건 아닌데……’라고 보니까 왜 안 보였느냐 하면 4분 36초가 빨리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버에. 맞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래서 하필이면, 18시 6분부터 18시 36분까지를 봤다고 봤는데 실제로는 18시 2분부터 18시 32분까지를 보게 된 거고 18시 32분부터 18시 36분 사이에 그 화면이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 이런 얘가지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째, 소리가 났는데 현장에 출동했는데 못 찾은 사람, 못 찾은 병사 두 번째, 화면을 보고 있으면서도 인지 못 한 책임자 세 번째, 서버에 4분 36초가 빨리 입력되어 있는데 왜 입력이 그렇게 됐는지, 기계적 결함인지 소프트웨어 결함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입력했는지 이 세 가지만 딱 판단하면 이 문제의 해결점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 어떠세요?

○국방부장관 서욱 맞습니다.

○김민기 위원 맞아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김민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시스템에요?

○김민기 위원 지난번에 해안으로 오리발 귀순을 했을 때요 이걸 너무 멀어서 어찌고저찌고, 여기 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다음에 경계 시스템의 기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식이었던 말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시스템이 잘못됐다면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을 너무 강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스템에 잘못이 있냐고요? 제가 보기에 여기서는 시스템에 잘못은 하나도 없네요.

○국방부장관 서욱 현재는 사람 잘못이라고 대

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김민기 위원 그러면 22사단의 군기 빠진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식 위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합참의장님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예.

○강대식 위원 월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시장비 복원해서, 18시 36분에 월책을 했는데 18시 2분부터 18시 32분까지만 확인해 가지고 김 씨의 월책을 식별하지 못했다, 상부 보고 없이 상황을 자체 종결했잖아요?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예.

○강대식 위원 이걸 왜, 30분간을 전후로 보든지 이래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예, 그런 부분들을 이번엔 식별해서 그 절차들을 보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이것은 누가 아무리 국방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더라도 딱 30분을 봤다? 거기 없었다 그러면 전후로 보든지 더 봐야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더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다음, 21시 17분 대대장이 김 씨를 열상감시 장비, 즉 TOD로 MDL 이남 1.2km에서 최초 식별했었고 귀순 가능성을 염두한 작전을 수행했는데 잘못된 상황 판단이었지?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당시 상황과 대대장의 판단은 여러 가지 지형적인 조건 그다음에 월북자의 이동 방향, 우리 GP의 위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현지 지휘관이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이고……

○강대식 위원 현지 지휘관이 판단한다 해도,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귀순이나 월북이나 월남이나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작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꼭 하나로 딱 묶어 가지고 귀순으로 보고 이렇게 작전 수행한다 하면 이것도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어긋난다……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염두에 두었지만 그것만 한 것은 아니고, 그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었지

만 여러 가지 우발 상황에 대한 작전들도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리고 결국은 초두에 월북을 귀순으로 오판해서 김 씨의 신병 확보가 어려웠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지금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실제 그것이 월북이라고 가정을 했더라도 그 당시에 발견된 지점, 저희들이 그것을 추적하는 거리와 시간 이런 것들을 판단해 봤을 때는 사실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접촉하는 것은 조금 어려웠다는 판단입니다.

○강대식 위원 철책 경보가 절단인 경우에만 여단이나 사단이라든지 군단으로 전달되고 이번처럼 절곡의 경우에는 전달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절곡이 되든 절단이 되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하고 상급 부대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대대에서 상황을 종결한 것이 우선은 제일 큰 과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대식 위원 오늘 여기 보면 현안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지만 22사단을 총괄하는 8군단이 2021년 2월에도 오리발 귀순 이후 해체를 연기했는데 다시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8군단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하여튼 전반적으로 국방개혁도 우리 군사대비태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혹 이 지형지물을 아주 잘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북한군 4명이 우리한테 감지됐다고 봤을 때 김 씨가 대공 용의점은 없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대공 용의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직접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저희들 지금까지 판단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관련 기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대식 위원 경계시스템을 이렇게 유린하고 능수능란하게 한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 씨가 12월 29일까지 연락이 되었고 그 이후에 연락이 안 됐다 이런데 이런 내용을 국정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군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사전 정보가 확실한 어떤 게 있을 때는 서로 연계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기관에서도 거기까지는 확인이 조금 안 됐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한 번만 발생했던 그런 일도 아니고 벌써 몇 번째 똑같은 일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사후약방문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정말로 더 철저한 방비태세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묻겠는데 오늘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관련 조금 전에 한미 당국이 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탐지자산 중 무엇으로 했습니까, 이 탄도미사일 탐지를?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오늘 탐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도탄 감시레이더 그다음에 이지스함 또 MCRC 이런 여러 가지 자산들로 함께 했습니다.

○강대식 위원 발사체는 무엇입니까?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발사체와 여러 가지 제원들은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미사일 종류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예, 그것을 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지가 않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분석들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홍철 다음, 설훈 위원님.

○설훈 위원 이번 월북 사건을 보면서 참 심각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장관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보는데 CCTV에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봤다는 사실……

감시하는 화면이 몇 개나 되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지금 소초당 9개 화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본부에 모아서 보는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소초당 9대씩 해 가지고 3×9=27, 27대의 카메라를 기본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그런데 그걸 근무하는 병력이 몇 명입니까, 9대를? 한 사람이 9대를 다 봅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그러니까 한 화면, 9개 분할 화면을 한 사람이 보는 겁니다.

○**설훈 위원** 한 사람이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설훈 위원** 그렇게 하는 식인데 그걸 못 봤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거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철책 감시 센서가 작동해 가지고 알람이 울렸는데 초동조치반이 출동을 했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 없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 이것도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깃털이고 발자국이고 다 무시해 버리고 못 봤다는 것 이것도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걸 보면서 이것 참 심각하구나……

더 결정적인 심각함이 따로 있습니다. 장관 아실 거예요. 출동한 이 병들이…… 이것은 기계의 문제점이라 생각하는데 서버와 장비의 시차가 안 맞기 때문에 동기화시켜야 되는 것 알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설훈 위원** 동기화시켜야 되는데 출동한 애들이 이것 동기화시키는지 몰랐다고 얘기하잖아요. 장비 작동법도 모르고 출동한 겁니다. 교육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매일 일어나는 상황인데……

장비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실제 상황과 장비가 돌아가는 시간이 안 맞다는 것도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기화시켜야 한다는 게 다 인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교육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걸 동기화시켜야 한다는 걸 모르고 그래서 4분 36초인가 놓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잖아요. 제대로 인지하고 CCTV를 다시 돌려 봤을 때 이걸 틀림없이 넘어갔다, 조치를 하자 이렇게 됐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동한 애들이 장비 작동법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틀어진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게 기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왜 꼭 동기화해야 되느냐. 그러나 동기화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었으니까 감시장비도, 장비도 동기화하고 서버도 동기화하고 둘 다 동기화를……

하루에 두 번씩 동기화한다면서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설훈 위원** 이걸 해야 되는데 출동한 애들이 이걸 몰라요, 동기화해야 되는 건지. 몰랐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보고받으셨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장비 중에 장비 하나가 빠진 겁니다.

○**설훈 위원** 그러니까 장비 동기화만 하고 서버 동기화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예, 서버가 메인 서버하고 저장 서버가 있는데 메인 서버를 동기화했는데 저장 서버를 누락한 것 같습니다.

○**설훈 위원** 그러니까 정비하는 줄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지금 장비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정확한 증거 아닙니까? 교육이 어떻게 됐나 이거예요. 참 한심하다고밖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장비를 갖다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걸 작동하는 걸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결정적인 교육인데.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이것은.

물론 사단장은 들어간 지 열흘인가 일주일밖에 안 됐다니까 책임 추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차근차근 따져 가지고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22사단이 한 번만 이렇게 아니잖아요.

여기 과거에 하던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답변도 안 나오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사건만 가지고 보더라도 책임 추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병이면 병, 장교면 장교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되풀이돼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께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작심하셔야 돼요. 국민 보기가 민망해요, 정말. 이 내용을 국민들이 다 알게 될 텐데 ‘군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 소리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월북하는지 월남하는지 여기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안 쏘다는 것은요, 현장에 있는 분들이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되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월남하는 건지 월북하는지 그조차도 판단 못 하고 있다면 참 안일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개월만 일했어도 상황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월남인지

월북인지 그것도 판단 못 하고 헛갈리고 있었다면 이거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위원님, 그거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군사작전은 현지 GOP 대대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작전하면서도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데요. DMZ 안에서 미상 인원이 이렇게 식별이 딱 되면 그거 하나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른 정보와 연결이 되는 연결점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설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고요.

아까 F-35A 동체착륙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칭찬한다고 그러지만, 매뉴얼에 나와 있는 부분이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선택을 둘 중에 하나 하는 건데요.

○설훈 위원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예.

○설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 매뉴얼이 허술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정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종사가 대단히 스킬풀(skillful)하고 기술이 뛰어나고 담대하고 그리고 상황 파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착륙할 수 있게끔……

○국방부장관 서욱 폼(foam)을 깔았습니다.

○설훈 위원 비눗방울도 치고 다 준비를 한 상태에서 착륙한 거 아닙니까, 기름 다 버리고?

○국방부장관 서욱 예.

○설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종사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 한 사람만 그런 상황이 아닐 테고 F-35A를 타는 우리 조종사들이 대체로 다 비슷한 상황일 거라 생각해서 본 위원이 듣지 해요. 그거 틀림없습니다. 듣지하기 때문에, 이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위원들께서는 매뉴얼이 없는 걸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확히 매뉴얼에 있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이 조종사에 대해서는 정말 장관이 대통령 표창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상반된 두 가지가 있는데 경계해야 할 문제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세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설훈 위원 다 좋은 게 좋다가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에서는 엄정한 게 보여야 합니다. 일벌백계가 있어야 합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曹明姬 위원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월북이나 미사일에 대해서 많은 말씀 하셨는데요.

월북 사건 앞에서 다 구체적인 건 말씀하셨는데요, 22사단이 ‘별들의 무덤이다’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군이, 군인이, 국방부에서 그냥 지금 ‘죄송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지휘관 인사 조치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하겠다…… 아까 작전사령관님입니까? 대책을 한참, 20분 동안 발표하셨는데 하나도 귀에 안 와 닿습니다. 1년도 안 돼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뢰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작년 9월부터 국방위원회 와서 5개월째인데요, 보도자료 80건 났습니다, 작년 9월 28일 날 제가 보도자료 났습니다. 바로 ‘월책귀순 잇었나, 작년 GOP 경계 먹통 350% 증가했다’. 2017년에, 저는 과학공학 하기 때문에 팩트로 이야기합니다. 17년에 136건, 이거 보셨습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서욱 예, 지난번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曹明姬 위원 17년에 136건, 18년에 110건, 19년에 70건이었는데요. 호우가 많다 그래서 20년에 315건이고 작년 8월까지 저희 보도자료 93건입니다. 합쳐 가지고 724건 고장 났어요. 현재까지는 지금 몇 건이 더 증가했습니까, 고장 건이?

○국방부장관 서욱 위원님, GOP 과학화라는 것이, 저희들은 거기서 평생을 근무해 봤던 사람인데 몸으로, 인력으로 하다가 초기 버전으로 나온 GOP 과학화 체계를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위원님 도움 많이 받아서 GOP 과학화를 더 업그레이드

이드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曹明姬 위원** 앞으로, 제가 국방위원회에 와서 느낀 점은…… 제가 작년 21대에 들어와서 과방위, 보건복지위, 국방위, 세 번째입니다. 다음 또 옮길 겁니다, 교육위로.

그런데 제가 보면 망원경, CCTV, 여러 가지 장비가 고장 나고…… 제가 지난번 10월 초에 2작사 국감 가서요, 우리 후방장비가 89%, 91% 거의 다 노후화됐습니다. 그때 제가 질타를 했더니 사령관님께서 19년에 예산 올렸는데 예산이 다 깎여서 장비 교체를 못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국방 위원님은 뭐하셨냐고 제가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비가 노후화됐고 지금 이런 부분이 또 제2, 제3, 제4의 사건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람,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요 명심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군, 국방부를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합참의장님, 방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사일어요, 78일 만에 또 미사일 쏘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발 ‘미상의 발사체’ 그런 용어 쓰지 말라고. 미상의 발사체가 아니고 나중에 탄도미사일이라고 나오잖아요. 용어를…… 그 발사체는 누리호가 발사체입니다. 미사일이든 위성이든 발사하는 론칭 시스템이라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미사일, 이지스함이나 우리 정찰기에서 탐지하시지요? 레이더나 적외선 가지고 하시지요?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예, 레이더로 탐지합니다.

○**曹明姬 위원** 레이더로 하시지요?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예.

○**曹明姬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레이더로 하는데 어떻게 발사해서, 발사하려면 미리……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어떤 징후나 레이더보다 적외선으로 원래 탐지를 해야 미리 발사할 것을 탐지하거든요. 우리나라 그게 안 돼요. 미국은 80년대부터 space based IR 해 가지고 적외선으로 이미 저궤도·정지궤도 해서, 3만 6000km 정지궤도에서 하고 저궤도에서 해서 다 징후부터, 발사전부터 미리 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위성이 없어요. 그게 없는데 청장님, 지난번에 우주정책포럼에 제가 참석을 못 했는데 보니까 우리 정찰위성 쏜다고 그렇게 우주정책센터 STEPI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 정찰위성 발사하실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지금 정찰위성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군만의 정찰위성은 425 사업이라는 형태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추가로 우리 군에서 425 후속 관련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초소형위성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曹明姬 위원**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 초소형위성하고 우리 425 위성……

○**위원장 민홍철** 정리해 주시지요.

○**曹明姬 위원** 예, 마지막이니깐 1분 더 주십시오.

○**위원장 민홍철** 예, 1분 넣었습니다.

○**曹明姬 위원** 초소형위성하고 425 위성은 실시간 정찰이 안 된다고 합참의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문제가 많다고. 해상도도 문제고 2시간마다 하기 때문에 실시간 정찰이 안 된다고. 특히 미사일 같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3만 6000km 정지궤도에서 레이더로, IR 하면 좋지만 너무 거리가 머니까 레이더로 3만 6000km에서 정지궤도 위성 조기감시 시스템, 조기경보 시스템 위성을 발사해야 됩니다, 제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처럼.

그런데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하고 같이 연계 시스템으로 GSOMIA, 일본에서는 그 자료를 받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GSOMIA는 상호 정보 교류하는 겁니다.

○**曹明姬 위원** 정보 교류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曹明姬 위원** 외국에 의존하지 마시고 첩보위성 발사하시라고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마지막 1분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민홍철** 예, 마무리하시지요.

○**曹明姬 위원** 그런데 우리가 GPS라든지 첩보위성이라든지 국방부에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위성을 국방부 자체에서 개발하지 않고 거의 과기정통부에 의존하고 있어요. 미국이든 선진국은 첩보위성 다 있습니다. 11cm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아리랑위성에 의존하고 있고, 이런 미사일 쏘는 거 정지궤도에서 다른 나라 다 감시합니

다. 그런데도 그걸 안 하고 있고.

그래서 GPS 같은 것도 미국도 국방성에서 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다른 나라에, 다른 부처에 다 의존하고 있고, 우주군 만들고 우주사령부 만든다는데 위성 전공자가 4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방대학원, 육해군·공군대학에 우주 위성 관련 과목도 없잖아요. 교수도 한 명도 없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진짜 우주사령부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 뒷북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공자로서 한 번 더 간곡하게 말씀드리면 국방부 자체에서 이런 첩보나 국방에 관련된 위성, 우주 쪽에 자체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를 영입해서 가지고 키우셔야 된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장관님, 제가 지난번에 국방부의 보고도 받고 자료도 많이 받았는데 작년 9월부터 보고자료는 굉장히 번드르르하게 너무 잘 만들어 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다른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자료가 대외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시행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를 80건이나 낸 이유 중의 하나, 제가 너무 놀란 것은 우리 민간인들이 국방시설물, 위성사진이나 항공사진에서 보안심의 받으려면 한 달 걸립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공항이나 군시설이나 국방시설물을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보안심의특례업체도 아닌 업체한테 하도 쥐 가지고 그걸 다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보안 쪽으로 국방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 중요한 시설물이 항공사진에 다 있는데 그걸 보안특례업체도 아닌 업체가 국토정보공사에서부터 하도받아 가지고 일반 공개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진짜 간첩이 왔을 때 중요시설물 다 보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무방비로 관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잘 검토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다음에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김병주 위원입니다.

공군참모차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장관님하고 공군참모차장님께……

이쪽으로 나와 주시지요, 잘 보이는 데, 잘 안 보이니까.

시간 좀 다시……

○위원장 민홍철 예, 그 시간은 다시 조정하시고,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김병주 위원 발언대 앞에 나와서……

○공군참모차장 신옥철 공군참모차장입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님하고 공군참모차장한테 어제 4일 날 F-35 항공기 비상착륙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제 비행훈련 중에 11시 45분에 F-35A 한 대가 계기판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것을 알고 이머전시(emergency)를 선포하고 1시간 6분 후인 12시 51분에 서산기지에 비상착륙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공군참모차장 신옥철 예,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조종사 상태는 어떻습니까?

○공군참모차장 신옥철 조종사는 어제 정밀신검을 실시했고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건강한 상태고 오늘 총장이 항의원을 방문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거기는 조종사가 1명 탑승하지요?

○공군참모차장 신옥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기체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공군참모차장 신옥철 항공기가 동체착륙을 하다 보니까 동체 하부에 일부 손상은 있었고 항공기 내부의 어떤 손상 여부는 현재 지금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F-35 전투기 사고 사례를 보니까 5건 발생했더라고요. 전부 다 비상탈출을 했는데 이렇게 동체착륙한 사례는 있습니까?

○공군참모차장 신옥철 그것은 외국 사례 포함해서 첫 사례입니다.

○김병주 위원 이 사건을 보면 공군 조종사의 능력과 군인정신 이런 것들은 저는 아주 높게 평가를 해요. 보니까 F-35 전투기 조종사가 갑작스러운 사고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조치를 아주 잘하고 성공적으로 착륙을 했는데, 몇 가지 확인을 할게요.

최초에 11시 45분에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나타났잖아요. 주로 어떤 것들이 고장이 났지요?

○공군참모차장 신옥철 예, 저고도항법 중에 항공기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항공기 이상을 느껴서 항공기를 안전고도로 취하면서 엔진 계기를 점검하니깐 플라이트 컨트롤, 조종간하고 엔진만 정상이었고 나머지 모든 장비는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엔진하고 조종하는 기능 외에는 전부 다 작동이 안 됐다고 들었는데, 맞는 거지요?

○공군참모차장 신옥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조종사는 항공기 위에서는 산소를 공급받는데 산소조차도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공군참모차장 신옥철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그때 조종사는 어떻게 조치를 했지요?

○공군참모차장 신옥철 산소는 저희가 고도 8000피트 이하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때 임무고도가 8000피트 이하였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한 1000피트에서 그 상황이 일어나서…… 1000피트는 지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민간의 안전을 위해서 고도를 한 8000피트, 산소 없이 견딜 수 있는, 산소호흡기로 견딜 수 있는 지역까지 올라갔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거지요?

○공군참모차장 신옥철 예.

○김병주 위원 그러면 사고 난 F-35하고 기지하고 통신은 처음에는 안 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공군참모차장 신옥철 통신은 처음에 되지는 않았는데 백업 통신장비가 있습니다, F-35에. 그걸 작동을 시켜서 조종사가 통신을 했고 백업 통신장비로 해서 비상착륙을 선포하고 가까운 서산기지로……

○김병주 위원 청주기지로 원래 내리게 돼 있는데, 혹시 거기는 여러 가지 민가에……

○공군참모차장 신옥철 항공기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가장 인접 기지인 서산기지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서산기지로 가기로 했고 그래서 비상착륙을 하려고 보니까 랜딩기어까지 작동이 안 돼서…… 랜딩기어가 안 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공군참모차장 신옥철 랜딩기어가 안 되면 앞

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교범상에 조종사가 상황을 판단해서 동체착륙을 하거나 아니면 비상탈출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데 동체착륙 결심은 누가 한 거예요?

○공군참모차장 신옥철 조종사가……

○김병주 위원 조종사가 하고 기지의 작전사령관이 허락을 한 거고요?

○공군참모차장 신옥철 조종사가 판단을 해서 ‘동체착륙을 하겠다’ 하고 작전사에 통보를 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서산비행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나요?

○공군참모차장 신옥철 서산비행장에서는 항공기가 동체착륙을 한다는 그런 비상 상황을 접수하고, 항공기가 동체로 활주로에 닿다 보면 마찰로 인해서 화재나 또 화재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화재를 방지하는 폼을 활주road에다가 깔고 그다음에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앰블런스나 소방차 등을 출동을 시켜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거품이 이는 소화방지용 폼을 깔 거지요, 거기다가?

○공군참모차장 신옥철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거기다가 그런 것들은 사전에 잘 준비가 돼 있는 거고……

○공군참모차장 신옥철 예.

○김병주 위원 그다음에 바퀴 기어가 내린 상태에서는 착륙이 쉬운데 기어가 없는 상태에서의 착륙은……

○공군참모차장 신옥철 어렵습니다.

○김병주 위원 대단히 기술이 필요한데,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한 것 같던데 맞습니까?

○공군참모차장 신옥철 예, 기어가 없는 상태에서 내릴 때에는 착륙 후에 방향 유지 같은 게 잘못돼서 활주로를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종사가 정확히 활주로 중앙에 접지를 해야 되고, 이번에 내린 조종사도 가능한 한 속도를 좀 정상보다 적게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보다는 10노트 적게 유지를 해서 접근을 했고 정확히 세나(centerline) 유지를 한 상태에서 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김병주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군 조종사가 평소에 그런 훈련을 못 하잖아요, 시뮬레이션으로만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용기를 내고 또 여러 가지 조종 스케일이 아주 뛰

어난 조종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착륙을 하게 됐는데,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조종사의 정신 상태나 또는 능력 이런 것들이 아주 우수한 걸로 보여지는데 어땠는가요?

○공군참모차장 신옥철 조종사는 교관 자격이 있고 비행 스킬은 높은 편이고 정신 상태도 훌륭합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공군 차장 주관해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요? 어떻게 조사하고 있나요?

○공군참모차장 신옥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항공안전단을 중심으로 해서 미 측 기술요원들과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조사가 언제쯤 끝나지요?

○공군참모차장 신옥철 대략 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병주 위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원인을 규명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공군참모차장 신옥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 우리 서욱 장관님 취임하시고 22사단에서 철책 귀순 사건이 2020년 11월에 있었고 2021년 2월에 해안 귀순 사건이 22사단에서 있었고 그리고 금년 1월에 월북 사건, 이 세 차례가 있었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예.

○김진표 위원 이 전체를 보면서 그동안 국방부나 합참에서 또는 방위사업청에서 서로 협의해서 마련한 대책이 이게 제대로 됐는가, 좀 미흡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돼요.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 현재 여러 가지 경계시스템이나 이런 걸 바꾸려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시범운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력요구가 오면 소요제기를 군에서 해 가지고 사타 또 예산 편성·집행 이렇게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이 문제는 군에서 스스로 신속시범사업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보고서 2-2페이지를 보니까 신속시범이 나는 당연히 22사단 전체를 신속시범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22사단 GOP 경계구역이 모두 30km인데 그중에 6

개소, 6km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 겁니다. 이것도 얼마나 느리게 적용하느냐 하면 첫 번째 사건이 난 것이 2020년 11월인데 그때부터 현재의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이 2015년, 16년 초기에 개발된 것이라서 기술적으로 소위 군에서 요구하는 ROC에 비해서 탐지율이 90%밖에 안 돼서…… 그런데 민간의 기술은 지금 99%짜리 탐지기가 나오니까 빨리 이것을 보강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다 동의를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걸 보니까 30km 중에 6km를 금년 2월 말까지 설치하고 그것에 따른 시범운용을 6월까지 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범운용 결과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소요제기, 사타, 예산 하면 전 GOP에다가 이걸 확대하는 데 2025~2026년까지 걸린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2025~2026년 사이에 시범운용을 한다면 적어도 22사단 전체에 시범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AI 딥러닝으로 사람과 동물을 분명히 구별해서 판단해서 경보를 울리게 하는 것이 가능한데 22사단에 이렇게 경계가 뚫리는 사건이 계속 나오는데 왜 22사단 전체 중에 6km만 하느냐 이거지요, 시범운용을.

그다음에 장관께 묻겠습니다. 각각, 청장님이나 장관님이나 대답을 해 주세요.

왜 이 시범사업을 이렇게 좁게 적용해 가지고 구멍을 안고 그냥 계속 관리해 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장비가 불완전하면, 그리고 계속 귀순 사건이나 이런 게 생기면 병력을 보강해야 되는데 병력 보강한 것이 작년 9월에 완료했다고 보고한 보고서를 보니까 GOP 담당 2개 여단의 편성을 보강했는데 예하 기간대대를 감편대대로 바꿔서 한 대대로 바꾸면 한 80명 정도 증원이 된다면서요?

장관님…… 이것 합참의장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이게 몇 명이나 도대체 병력을 보강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작년 초 기준에서 그 부대가 원래 개편되면 1200명을 줄이기로 돼 있는 것을 그걸 보류하고 오히려 거기보다 추가해서 1000명 정도를 보강을 했습니다.

○김진표 위원 1000명? 그러면 그것은……

○국방부장관 서욱 예, 그래서 최초 계획 대비 2200명 정도를 늘려 준 겁니다.

○**김진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지금 신속 시범사업을 확대 적용할 수 없는 현행법상의 한계가 있다든가 그러면 우리 국방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라도 이걸 했어야 되고, 병력 보강도 감시구역과 감시인력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결국은 장비가 나빠서 양치기 소년 우화가 우리 병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아이고, 또 이것 동물이 건드린 것 잘못 나온 걸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경보음을 울렸는데도 월북이나 귀순하는 것을 감지할 못 한 거고, 그다음에 병력이 사람들이 가서 일일이 확인하고 감시하기에는 태부족한 병력을 배치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지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위원님, 저 방위사업청장입니다.

먼저 신속시범획득사업과 관련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미흡하게 조금…… 그러니까 일종의 사업 범위 자체가 좀 제한적으로 한 부분은 사실인데요, 이 신속시범획득사업을 작년에 처음 도입하고 올해 이제 본격화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규모 자체를 제한적으로……

○**김진표 위원** 아니, 첫 귀순 사건이 2020년 11월에 있었고 우리 서욱 장관님이 취임하기 두 달 전에도 서해안에서 또 월북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어서 그때마다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이거 바뀌야 된다는 얘기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민간에서 ROC 감지율이 99%짜리가 나왔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왜 이렇게 느리게 하느냐 이거지요.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그 AI를……

○**김진표 위원** 금년 2월이나 돼서 설치하고 6월까지 시범 한다는 게 국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그 제품을 납품받는 것이 2월까지 하다 보니까, 납품하는 업체가 제작 기간도 좀 필요했고 AI를 활용을 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감시체계……

○**김진표 위원** 저는 하여간 방위사업청이나 장관님이나 이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대해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그 많은 군인들이 고생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방에 대해서 믿

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불신이 잦은 이런 대책을 하느냐 이거지요. 좀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 저희들 좀 더 속도감 있게,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다음에 병력 증강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게 밝혀졌으면 지금 신속시범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데까지 빨리 확대해서 22사단 전체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든가 아니면 작전 지역을 바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여단하고 다른 사단하고 이걸 나누어서 작전해야지 다른 사단 2배, 3배 되는 지역을 갖다가 똑같은 병력, 그것도 줄이기로 한 병력을 보완한 것까지 따져서 1000여 명이라는 거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군인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그런 특수한 기관인데 이런 위험요인이 자꾸 생기는데도 계속 뚫리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제시하면 국민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장관님 대답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서욱** 원인 분석을 여러 가지로 해 보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장비의 문제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해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의 현재 시스템을 잘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표 위원** 현장에서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데 병력을 충분히 늘려 주지 못했든가, 아니면 우리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교육훈련,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디에 더 원인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그래서 저희는 후자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고, 병력의 문제는 사실은 사단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면, 거기의 GOP 병력은 사단 내의 병력이 아니겠습니까? 사단 내의 병력을 증원하든가 하는 그런 문제들은 다시 한번……

○**김진표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에게,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별백계 할 것은 다 따져서 엄중처단 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발표해야 될 겁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그래서 지금 원인분석을 우선 1차 했고요, 거기에 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

할 것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왜냐하면 공청회가 지금 계획돼 있기 때문에 많이 하실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여야 한 분씩만 하세요.

더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기호 위원님 해 주시고, 시간은 3분으로 일단 해 주시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파발총같이 해야겠네.

2019년도 고황봉 대대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트폴에 스피커를 배치해서 경고방송을 하고 경고사격으로 이어지는 초동조치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그때 다 현장 가서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이 보장됐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감시장비까지는 확인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우선 경고방송을 할 수 없는 게 4·27 판문점 선언으로 인해서 대북 확성기를 철거했습니다. 민군작전과에 확인하니까 기동 확성기를 설치하는 데 최소한도 네 시간 정도 걸리고 고정 확성기는 최소 3일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확성기는 사실 이런 긴급조치 상황 때는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대장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고사격을 이번에는 왜 안 하셨어요? 경고사격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사람에 대해서 사격은 안 해도 경고사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고사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GP 병력, 초동 대처하는 데 수색대대와 차량으로 이동해야 돼요, GP에 사람이 없으니까 차단작전을 하려면.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철책에서 들어가는 시간이 12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2분이면 한 시간에 4km를 이동한다고 했을 때 약 800m를 가 버립니다. 비무장지대 2km 중에서 800m 가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비무장지대 가운데쯤 있으면 초동조치부대가 차로 열심히 달려서 GP에 도착했을 때 이미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책을 넘은 이

후에는 잡을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데이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9·19 군사합의에 의해서 철수한 GP에 병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어요, 약 6~7km의 비무장지대 안에 우리 초소 1개도 없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가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과도하게, 그렇지 않아도 GP가 몇 개 안 되는 걸 철수한 겁니다. 북한 인민군하고 협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배치를 해야 됩니다. 배치를 허락하지 않고 배치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경계 병력이 있어야 돼요. 매일 가서 매복을 서든 하지 않고서는 비무장지대를 완전히 내놓는 거예요.

이 GP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6~7km 지대에서 가운데 이것 하나만 빼 버리면 완전히 빈 공간이 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시간상으로 병력을 GOP 라인에서 투입했을 때, 이미 도착했을 때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넘어오든가 넘어가는 데 절대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데이터로 그렇게 나와요.

○국방부장관 서욱 위원님, 지난번에 이것을 복기해 보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은 철책 넘어설 때 저희들의 최초 보고가 잘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차단이 가능했다고 일단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드리는 말씀 중에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고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보십시오, 장관님.

○위원장 민홍철 자, 1분 더……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한기호 위원 처음에 민통선 초소에서 발견했을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민통선 초소에서 발견하고서 경고만 했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 겨울에 농사짓는 사람도 없고 관광객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민통선 초소까지 와서 ‘가라’ 한다고 돌아가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심하지 않아요? 쫓아가 봐야지요. ‘왜 왔어요?’ 하고 물어봐야지, ‘어디서 왔어요?’ 물어봐야지, 그냥 가라고 놔둬요? ‘들어가지면 안 됩니다’ 하고 그냥 놔둬요?

○국방부장관 서욱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기호 위원** 거기는 제가 연대장 때 명파리까지 맡았었던 곳이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알아요. 그 북쪽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 온 사람이 이 겨울에 눈이 하얗게 깔리는데 왜 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민통 초소 접근 금지 방송 문제는 저희들이……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경찰이 의심스러우면 가서 확인해 보잖아요. 사람이 의심스럽잖아요, 북장 자체도 위아래를 전부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리털인지 닭털인지 그 옷을 입었으니까. 완전한 방한복을 입고 그다음에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것 이상한 거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서욱** 제가 GOP 대대장을 해 봤는데요. GOP 대대장의 작전책임구역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철책 이남에 있는 민통선, 여기가 중심 존(zone)을 가지고 경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합참 전비검열 나갈 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던 핵심 국면이 민통 초소 국면을 보고드려야 된다, 철책 넘어가는 것을 보고드려야 된다, DMZ 안에서의 활동을 보고드려야 된다 이것을 제가 지시해 가지고 이게 정리가 된 것인데요. 민통선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의심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도. 그리고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데 월북인지 월남인지도 구분을 못 하고 이것은 정신적으로 이미 완전히 이완됐다고 보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아니 위원님,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해 드릴 수는 없는 것이 제가 전비검열실하고 그 부대 지휘관들하고 여러 가지 상태를 다 체크했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데, 과오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현장에 있는 장병들한테 조금 영향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현장 장병들이 아니고 군 전체에……

○**국방부장관 서욱** 아니, 저도……

○**한기호 위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북한에다가 대북 메시지를 보내는 자체도 이미 우

리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간첩인지 아닌지도 의심 안 합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민을 많이 했는데 지난번 서해 쪽의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결심을 한 것이고요, 제가 결심을 한 것이지만.

○**위원장 민홍철** 자, 정리하시고요.

○**한기호 위원**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철책 자체도 형상 자체가 잘못됐다, 그다음에 GP에 병력을 재배치하는 것도 판단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장관님.

○**국방부장관 서욱** 하여간 방식을 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후속조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한기호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계속 제가 따져 보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예, 그렇게……

○**위원장 민홍철** 다음에 신청해 주신…… 김병주 위원님 신청하셨고요.

또 있으십니까?

공청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안을 짧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핵심만.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합참의장님!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예.

○**김병주 위원** 이번의 22사단 월북 사항은 경계 실패지요?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예,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완벽한 경계의 실패예요. 군에서 경계의 실패는 용서받지 못하지요, 사실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 저는 여기에서 실패한 데는 국방부·합참·지작사가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대대를 따지고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작년 이후에 보강을 제대로 못 했다고 봐요.

작년에 22사단 사건이 났을 때 본 위원이 제시했던 것은 선 개념으로 경계를 하지 말고 벨트식으로 해라, 특히 GOP 철책선으로부터 민통선 사이에 CCTV를 설치해서 그 사이가 감시되도록 하라고 작년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민통선에서 철책선까지 CCTV 설치된 게 있나요?

○**국방부장관 서욱** 부대별로 조금 보강한 게 있는데……

○**김병주 위원** 제가 이번에 보니까 올해 예산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경계를 서라는 건 말이 안 되지요. 민통선 중간중간에 CCTV가 있으면 이미 민통선에서 올라올 때부터 감시가 되는 거지요.

두 번째, CCTV는, 과학화 경계체계는 아직 초기 단계지요. 그래서 불완전한 상태가 많아요. 조금 전에도 장관님이 그거 불안하다고 했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초기 버전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병주 위원**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오류가 많지요, 사실은 민감하고?

○**국방부장관 서욱** 예.

○**김병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학화경계시스템 플러스 인원이 같이 하는 경계체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CCTV가 주가 되고 인원은 보조가 되는 시스템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것도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이에요. CCTV가, 과학화 경계체계가 완전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인원과 같이 하라 하는데도 마치 ‘이것만 주가 되니까 된 경고 하면 출동해서 한다’ 이런 정신 자세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세 번째, 통합 전투력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민통선을 들어가려는 어떤 인원이 발견됐어요, 경고했어. 그러면 그것을 GOP 부대에 알려 줘야지요. 알려 줬나요? 알려 줬으면 ‘후방 경계하라’ 그 한 소리만 대대장이 지시하면 될 텐데 왜 그것을 못 한 거지요? 왜 이런 통합 전투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또 중요한 것은 지휘 결심이에요. 중대장, 소대장, 대대장, 지작사령관, 합참의장 뭐 한 거예요! 이러한 지휘체계에서 어떤 결심을 하고 조치할지를, 너무나 고착되어 있는 겁니다. 현장의 과학화 경계체계……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민홍철** 예, 마무리하시고요.

○**김병주 위원** 과학화 경계체계에 소리가 나서 출동했다 하잖아요. 왜 확인을 못 했느냐? 철책을 절단하고 넘어갔으리라고 생각하고 절단만 봤을 확률이 많지요. 다 넘어간 것을 점검을 잘 안 했을 확률이 있지요. 그렇게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GOP 지역에서 열점이 보였어요, 비무장지대에. 그러면 다양한 가능성을 봐야 되는

데 비무장지대에서 보이니까 당연히 귀순자로 많은 주안을 두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버되고 조치할 조치를 못 하는 거지요.

이것은 사실은 이런 체제를 못 한 국방부 관계자, 합참 관계자, 지작사 관계자들이 책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이 실제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합참의장, 앞으로 이것 어떻게 보강하실 거예요?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현장의 작전수행능력을 키우는 것 또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작년 2월에 있었는데,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건 진짜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위원장 민홍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하셨지요?

김민기 위원님.

○**김민기 위원** 합참의장님이나 장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표 한번 띄워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는 무슨 표냐 하면 최근 12년 동안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발사 현황입니다. 총 68회 정도를 했고요, 약 108발 이상을 쏘았습니다. 이 중에는 훈련도 있고 실험도 있습니다.

우선 검정색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파란색은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빨간색은 중장거리 그리고 보라색은 순항미사일, 민트는 SLBM, 초록색은 기타(분석 중) 이런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는 액체연료를 쓴 거고요, 세모는 고체연료를 쓰고요, 마름모는 어떤 연료를 썼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실험 혹은 훈련으로 발사한 저 발사체를 보면 시간적으로 12월과 1월에는, 역대 12월에는 2012년 12월 12일 날 발사한 것, 즉 의도가 보이겠지요. 며칠 뒤에 대통령선거가 있었지요. 그다음에 1월 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햇수로 13년간 하나도 없는데 오늘 아침에 한 발이 발사된 겁니다.

이 표에서 가만히 보시면 동그라미에서 세모로 옮겨 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라는

것은 액체연료고요 그리고 세모는 고체연료지요. 미사일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은 실험 혹은 발사를 할 때는 3월 달입니다. 그다음에 7월 달, 8월 달, 9월 달이지요.

제가 정치적 상황과 외교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반드시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미사일 발수가 많이 늘어나면 훈련 상황이고 미사일 발수가 한 발 혹은 알 수 없으면 이것은 실험 상황이 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오늘, 왜 1월인가와 그다음에 혹여 이때까지를 분석해 본 결과 무슨 메시지가 있나라는 것이 저의 궁금증입니다.

우리 합참의장님 혹은 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 원인철 지금 여러 가지 의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 첫 번째는 북한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자기들 자체의 어떤 이런 미사일 발사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또 대외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는 대내적인 것이 있을 것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관련 기관들하고 의도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당 중앙위 4차 전원회의에서 국가 방위력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어떤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당 전원회의에서 신년사를 대체하는 대남·대미 메시지가 없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를 통한 어떤 메시지 발신이 일부 어떤 정치적인 의도 하에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나름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마지막으로 안규백 위원님.

○안규백 위원 장관님, 22사단장이 부임한 지 일주일뿐이 안 됐는지요?

○국방부장관 서욱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월 16일 부임을 했고 그 안에 일부 어떤 해프닝이 있어서 격리도 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이런 저간의 상황에서 군단장이나 사단장이, 그 지역을 맡는 책임 반경에 있는 사단장들이, 가장 우수한 자원을 아마 장관이 선

택을 해서 그쪽으로 보임을 했을 것 같은데…… 물론 병사부터 장교에 이르기까지 신상필벌의 책임은 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장관의 경험칙과 직관에 의한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이 시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잘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하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리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9·19 군사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 간 적대행위가 없었고 여러 가지 남북 간의 대치나 소요 사태가 없었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서욱 22사단 건이 그걸 좀 곤혹스럽게 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9·19 군사합의가 남과 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인 어떤 관점에서 상황 관리가 잘 되고 있다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공청회도 있고 이래서요, 위원님들의 추가질하는 여기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다시피 국방 관련 상황이 연초에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도 또 많은 우려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22사단 경계작전의 실패 이 문제는 그동안에 많이 지적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이 안 된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특단의 대책이 정말 이번에는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지요, ‘과학화 장비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경계 전선이 너무 넓어서 병력이 모자라니까 증원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일이 반복됐다, 참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될지 참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장비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훈련과 군기의 어떤 해이 이런 문제가 엄중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22사단한테만 맡겨 놓을 게 아니다, 그러면 지작사령관이나 합참의장께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한번 관장을 해 본다든지 이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왜 그때 생각을 못 했느냐, 사안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는 얼마든지 많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왜 귀순한 것이냐, 월남한 것이냐?’ ‘이런 걸 왜 판단을 못 했느냐?’ 이렇게 우리는 지적을 합시다마는 지나고 보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날 수 있고 그 생각 난 것이 새로 개선하는 데 반영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지금까지 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22사단의 그런 오명이 깨끗이 씻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지적이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확실하게 군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현안질의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료하고요, 긴급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훈 위원님의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가 많이 지체되어 있는데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한 10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회의장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10분 정도 정회하였다가 16시 40분에 속개해서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군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욱 국방부장관님, 원인철 합참의장님, 강은호 방위사업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은 이석 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홍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기다리셨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군무수당 법률안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 법률 심사에 참고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진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서 국방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국방위원회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공청회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기에 참석한 분들에게서는 녹취와 촬영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는 국방부 측 담당 국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군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

(16시44분)

○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군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다섯 분의 진술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재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군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윤상현 의원님, 설훈 의원님께서 2건 그리고 강민국 의원님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제정안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관련 법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는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용호 국제정치학 박사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보훈교육연구원 이용재 박사님입니다.

다음은 한국국방연구원 박문언 박사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통일안보연구소 신종태 박사님 오셨습니다.

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대학교 하태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인사)

이상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요,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진술인들께서는 7분 내외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발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다섯 분의 진술이 다 끝난 후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7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용호 박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최용호 안녕하세요?

최용호 박사입니다.

저는 국방부에서 10여 년 동안 베트남 전쟁사를 담당했고 그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관련 연구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인연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한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해외근무수당과 전투수당의 개념부터 결론 및 건의 순입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해외근무수당은 해외 근무로 인해서 추가 발생하는 생활비입니다. 전투수당은 군인이 전투를 수행하는 생명수당입니다. 따라서 2개의 수당은 명백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전 당시 우리나라는 해외파병의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2개의 수당을 혼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월장병 전원에게 배포한 주월한국군 수첩에도 해외근무수당과 전투수당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대 초반까지 과월장병 대부분이 2개의 수당을 동일 수당으로 인식했는데, 대표적으로 과월장병이면서 군사 분야 전문 연구자인 지만원 박사가 2002년에 출간한 ‘월남전의 진실’에서도 해외근무수당을 전투수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의 소수 일부 담당자들만 2개의 수당을 구분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2000년대 초반까지 참전 단체 중심으로 제기한 문제는 미국이 지원한 수당의 일부만을 과월장병에게 지급했고 나머지를 경부고속도로 등 국가기간산업에 전용했다, 또 미국과 브라운각서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면 계약이 있

었다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말 베트남전 참전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국가가 임의로 전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정부의 입장을 고려치 말고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는 그대로를 공개하라고 국방부에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의 지휘하에 국방부 정책실 주관으로 군사편찬연구소 최용호 책임연구원을 책임자로 임명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제시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다시 보고를 드렸는데 당시 미국에서 받은 수당은 해외근무수당이었고 이를 100% 장병에게 지급했으며 미국과 월 단위 결산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한 내용을 증빙 자료를 포함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 보고에는 해외근무수당에 국한했고 전투수당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수석은 관련 문서를 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할 것을 주문했고, 국방부는 외교부와 협조해서 2005년 8월 브라운각서 관련 문서를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문서를 공개한 후 해외근무수당의 의혹은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그렇게 되자 과월장병과 단체는 ‘전투급여금’ 명칭을 사용해서 전투수당 지급요구를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월간조선 2월호에 구체적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당시 미 상원의 ‘주월한국군 추가수당 지급 중지안 통과’ 외교부 보고서를 근거 자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자의적 협상을 제안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있었던 협상자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몇 건의 전투수당 의혹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전투수당을 한국에 지원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과월장병과 단체는 정부가 착복했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투수당 문제의 본질은 63년 5월에 제정한 군인보수법 17조에 명시한 내용에 대해서 시행령을 정부가 제정하지 않으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전투수당을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이를 거절

함으로써 전투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정부의 몫으로 되었습니다.

전투수당은 군인보수법에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에 전투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는 2015년 10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연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의 답변이 대표적입니다.

황 총리는 당시 ‘베트남의 전시는 우리나라 전시와 사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이 내용은 당시 진행 중이던 전투수당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황 총리의 답변 일주일 후인 10월 22일 황 총리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인용해서 정부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주장, 내용들은 세 가지 정도의 모순이 있는데요.

첫째, 지급 논리의 모순으로 정부는 1969년까지 전투수당 지급을 위한 대미 협상을 계속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협상할 때는 전투수당을 줘야 된다는 것이고 국내에서는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논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는 법을 제정한 후 전투부대를 파병할 때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관련 시행령을 제정 및 개정했습니다. 그 시행령에 전투수당에 관한 내용은 삽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행령 입법부작위의 모순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군인 생명에 대한 평등권의 모순으로, 건군 이후 대한민국 군인이 겪은 전쟁은 두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전 국민과 함께 참전한 6·25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명을 받은 일부 군인이 국민을 대신해서 참전한 베트남 전쟁입니다. 당시 정부도 이런 내용들을, 전시 파병임을 확실하게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가 전시 복무 적용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답변한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전쟁과 6·25 전쟁은 분명 다른 전쟁이 맞지만 두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군인의 생명에 대한 가치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등권의 문제와 위헌의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파월장병의 기여도입니다.

베트남 파병이 한강의 기적을 부르는 원동력이 됐다는 사실은 다수가 인정하는 이론입니다. 그 배경에 브라운각서가 있습니다. 브라운각서는 군

사원조 10개 항과 경제원조 6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문서를 보면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대미 협상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순위는 국가 안보의 문제, 2순위는 국가 경제 발전의 문제, 3순위가 파월장병의 안전과 처우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정부가 대미 협상에서 미국의 안보·경제 지원을 포기하고 파월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협상했다면 전투수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국회와 정부는 전투수당을 대신할 포괄적 보상특별법 제정과 함께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전투수당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 규명으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단체와 정치권, 정부가 적극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홍철 감사합니다.

최용호 박사님, 아주 간략하게 또 요약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용재 박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용재 저는 전투수당 진상 규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드릴 순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부터 결론 순이 되겠습니다.

연구 배경 및 목적에서, 월남전 참전의 성과에 대해서 참전자의 대우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즉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그리고 최초의 장기간 파병과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57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05년 8월 26일 민간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사·발표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해외군무수당에 한정된 조사였고 전투군무수당은 조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률안 발의는 4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전투수당 의혹 증폭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월 당시 국회 및 정부의 입장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은 1975년 미 육군성 발간 ‘베트남 참전 동맹국 연구’ 124~125페이지를 보

게 되면 주월한국군에게는 미군에게 지급되는 동일한 율에 따른 전투급여금을 포함해서 근무 중 사망 또는 상이자에 대한 사례금과 보상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5년 1월 국회에서 정부로 ‘월남공화국 지원파견 전 장병에 대한 전시 복무’를 적용하기로 했고 또한 65년 3월에 정부가 국회로 다시 전투유공자의 진급에 관해서는 군인사법 그다음에 파견 근무 기간은 전투 기간에 관한 특별규정, 그다음 파견 기간 중 무공이 뚜렷할 경우에는 상훈법상 무공훈장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69년 4월에 국방부 인사국에서 합참기획국으로 65불 지급을 제안하였습니다.

전투수당의 의혹 증폭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 2월의 브라운각서 공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게 되면 원칙적으로 공개를 반대했으며 불가피하게 공개를 할 때에는 여론을 자극시킬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78년 10월의 프레이저 보고서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이 한국의 베트남 참전을 위해서 10억 달러 지원을 했는데 그중 9억 2500만 달러가 외환보유액으로 비축이 됐고 또한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 군에 제공한 고율의 급여에서도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 윌리엄 포터의 그때 당시의 언급 내용을 기술하여 보고자 하면 쉽게 말해서 지원금은 정부로 보내졌고 그 돈은 실질적으로 더 낮은 수준으로 장병들에게 지급을 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투수당 의혹 증폭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헌법 및 전투근무급여금 관련 법령의 태생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 군의 파병을 위한 헌법의 개정에서도 5호 헌법에서는 한국 군의 해외파병 근거가 없었는데 6호 헌법에서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보수법 제정을 63년 5월에 했는데 여기에 전투근무수당을 전시·사변 등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해외파병의 시행이라든가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등 법률적 여건을 완비했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한국 군에게 지급돼야 할 전투급여가 해외근무수당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정부의 지불 능력의 한계가 있었고, 사이밍턴 청문록에 명시된 지원 금액과 한국 국방부의 수당 지급액 간에 차이가 발생했고 부족분을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 그림은 사이밍턴 청문록에 관련된 미국의 지원 내역과 오른쪽에는 국회의 번역본이 되겠습니다.

군원이관 중단 지원금에서 부족분을 충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미국의 대외관계 보고서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국내외 각종 공개 자료의 암시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 상원의 주월한국군 추가수당 지급 중지안 통과를 70년 8월 24일 날 외무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주월 연합군 중 미국이 지급하여 온 해외근무 및 전투수당은 미군이 받는 액수보다 더 많은 액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풀브라이트(Fulbright) 상원의원의 군사조달법 수정안 심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미군과 동일한 전투급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월 당시 참전 기간 중 국내외 언론 보도 주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서울신문 66년 1월 30일 자 그리고 66년 2월 22일 자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69년 12월 미국의 더 이브닝 스타(The Evening Star)지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도 월남전 참전 태국 및 한국 군인에게 1인당 7800불을 지원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 기관 등의 입장을 살펴보게 되면 월남전은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의 국가비상사태에 비해당된다고 법제처라든가 서울행정법원에서 판정을 했고 그리고 전투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6년 3월의 브라운각서로 인해서 정부의 정책이 경제적 실리 취득으로 방향이 전환되었고, 이러한 것은 정부의 절박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1980년대 무렵 정부 기관의 비밀 문건 공개로 인해서 이러한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고, 헌법에 따라서 파견된 파견병력을 전투종사자로 보지 않는 황당한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미지급분을 일방적으로 지급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파병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급여금이 과소 또는 미지급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월남 참전자들의 숙원과 불만을 해소하고 갈등의 조정에 따른 기회비용의 감소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홍철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언 박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박문언 한국국방연구원의 박문언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게 된다, 안된다라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명예를 존중하고 선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대신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주로 문제된 게 일단 전투군무수당 지급 대상이었느냐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수당이 우리 정부에서 전용 또는 축소됐는지 이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 다른 참전 군인들의 예우와 비교했을 때 정부에서 적절한 보상을 했는지 이 3개의 문제가 주로 관련 법령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대통령 특별지시로 조사가 진행된 바도 있고 그다음에 사이밍턴 청문보고서라든지 해파 군무수당 관련 규정이라든지 참전용사들의 어떤 기록을 보면 조금 의혹이 해소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조사가 된 것을 기초로 해서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외파견군무수당은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군인보수법 제정 당시에는 16조의 특수군무수당 중에 해외파견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64년 9월 11일 날 태권도 교관단하고 그다음에 이동외과 병원진이 부산을 출발하면서 7월 28일 날 처음으로 수당지급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액수가 65년 1월 27일 날 조금 증액이 되었고요. 이게 군인보수법시행령으로 제정이 되면서 기존 규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82년에 공

무원보수규정이 생기면서 폐지가 되었는데, 우리 군의 해외 파견근무가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게 91년이다 보니까 이때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군무수당 지급규정이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34페이지에 보시면 당시에 병장이 최초 1.2볼이었고 이병이 0.6볼이었는데 조금씩 상향이 됐습니다. 당시 병 봉급이 병장이 200원, 이병이 130원 정도였으니까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월급이 1달러도 안 될 때였는데, 이게 월 단위가 아니고 일 단위 계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면 해외파견수당은 상당한 정도의 수당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2년 이라크 파병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위험도라든지 임무의 종류라든지 이렇게 등급가중치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36페이지 표 1·2·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에는 일 단위였는데 이때부터는 월 단위로 계산을 하되 업무 수행 환경이라든지 임무 종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눠서 계산을 했습니다. 전투지대도 위험지역하고 비전투지대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2018년에 조금 인상이 되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병의 해외파견수당은 1474볼입니다. 이게 165%까지 가중이 되면 거의 2000볼 가까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두 번째는 전투수당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국제법상의 전쟁하고 국내법상의 전투 부분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적용되는 전시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나라나 아니면 외국에서 전쟁을 하느냐에 상관없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ICC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이 되지만 전투수당 지급을 할 거냐 말 거냐, 얼마를 줄 거냐, 어떤 형식으로 줄 거냐, 해파수당으로 줄 거냐 아니면 전투수당으로 줄 거냐 이것은 우리 국내법상 입법 형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법제처하고 법원에서 명확히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보태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령에서 군인보수법에 보면 전투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요. 전시관계법령인 전시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에 보면 월금액의 1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한

다 그러더라도 당시의 월남전 참전 군인들한테 지급된 것은 이것 이상이었지요.

그러면 이전의 한국전쟁 때는 어떻게 이것을 지급했느냐? 자료를 찾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미군정하고 6·25 거치면서 법령이 거의 제대로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신 육군 급여 변천 자료를 보면,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가 당시 군인 봉급 정액표인데요. ‘육군인사역사’라는 책자에 보면 52년 11월부터 중사 이상은 전시수당하고 본봉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때 전시수당은 본봉의 2배를 줬고요. 물론 이게 58년까지 이어지는데요.

병사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줬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50년 9월 그다음에 50년 10월에 병사 봉급이 원래 봉급의 한 2.5배 정도 상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중사들은 명백하게 전시수당을 지급했고 병사들은 봉급을 인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베트남전 참전용사 예우를 어떻게 하느냐?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의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참고하기는 어렵고요.

미군이 어떻게 했느냐를 보시면 미군은 처음에 배지 페이(badge pay)라고 그래 가지고 2차 대전 당시에 전투군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부 수당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6·25 전쟁이 되면서 최소 6일 이상 전투부대 그다음에 한 달에 45달러 전투수당을 인정했는데요. 이게 요건이 뭐냐 하면 위험과 고난을 겪고 있는 연대 이하의 최전방, 주로 지상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여기에 파견됐던 인원의 한 20~30% 정도만 지급됐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베트남전을 수행하면서 베트남은 전체가 다 전쟁 위험지대고 정글이다 보니까 하스타일 파이어 페이(Hostile Fire Pay)라고 용어가 수정되면서 조금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1970년, 80년 오면서 테러라든지 민간인에 의한 공격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시 이머넌트 데인저 페이(Imminent Danger Pay)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조금 더 완화되는데요. 당시에 60년에는 65달러였습니다. 이것은 간부하고 병 상관없이 모두 65달러를 지급했었고요. 64년 베트남 이병 봉급이 78달러였고 해외파견수당이 8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파견수당은 만약에 본국에 있으면 좀

편히 지낼 수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시설이 열악한 데 가서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이었습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 베트남전 당시 우리 국군 병사의 봉급하고 파견수당을 죽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봤는데요. 병사 같은 경우에는 본봉의 한 30배 많으면 40배 가까이 되고, 대위도 한 3~4배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전투군무수당은 우리 지금 법체계 자체가 전시를 상정하고 있고 외국에서 하는 것은 해외파견수당으로 이제까지 계속 법령에 인정돼 왔고 그렇게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투수당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해외파견수당이나 아니면 보상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적절한 것 같고요.

대신 십자성 작전을 여기에 포함시킬 거냐? 딱 하나의 법안에서 그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시의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 전쟁 이외의 군사 작전으로 보고 참전으로 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개인적으로 월남전 참전도 물론 보상이 돼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6·25 참전군인에 대한 보상도 당연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형평성을 맞추려고 그러면 참전군인의 참전명예수당을 조금 높여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명예를 선양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태 박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신종태 선진 외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자 예우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종태 교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인은 생략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선진국에서는 그러면 베트남전 참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우하고 명예 고양정책을 어떻게 펴고, 왜 베트남전 참전용사 특별법이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투수당 개념이나 입법 반영에 대한 논리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선진 외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자 예우는

미국을 포함한 뉴질랜드 등 주로 선진국은 참전 용사에 대한 희생을 재평가하고,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오바마 대통령이 참전자에 대한 희생을 재조명하는 그런 언급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주요 통수권자들이 베트남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지만 우리 한국의 현실은 여러 가지 명예 고양이나 실질적인 지원 면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선진 외국군의 참전용사 보상 실태입니다.

우선 미국은 2012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참전용사의 희생이 오랫동안 잊혀져 왔고 그들의 애국심과 헌신은 재조명되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에 따라서 베트남전쟁기념관이 건립되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내외 정도씩의 명예수당이 주어지고 또 베트남전에 관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저 그림은 베트남전쟁기념관 사진입니다.

호주의 경우도 ‘앤잭 데이(Anzac Day)’라고, 현재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쟁기념일 날 한국·베트남전 참전유공자들까지 동참해서 항상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한국인 중에서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10년 이상 호주에서 거주하고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은 호주-베트남전 참전자에 준하는 모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 뉴질랜드 총리는 참전용사와 가족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못 한 점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전위로금을 일시금으로 한 400~600여 만 원 지급하고 참전명예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앓고 있는 참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을 해 주고 있고 상이연금 신청할 때는 그 연금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반대입증 책임을 정부가 나서서 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2005년도를 제대군인의 해로 선포하고 15만 제대군인들에 대해서 다양한 국가적인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들의 명예를 고양시켜 왔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꼭 베트남전 참전자뿐만 아니라 한국전이나 다른 전쟁에 참전한 사람을 통합해서 예우를 하고 있고 장애나 소득상실급여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으며, 특히 제대군인에 대한 재심 및 소청위원회를 설치해서 자기의 상이등급을 더 나은 등급으로 신청하면 정부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고, 2004년도에는 약한 56%의 상이군인들이 상이등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특별보상법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 베트남 파병기간 중에, 6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은 약 2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참전하고 나서 1973년도에 보면 약 32억 불로 늘어나고,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하면 파병기간 중에 여러 가지 외화 유입 통계를 냈을 때 67억 달러라는 그런 외화 수입을 한국은 가지게 됩니다.

또한 1984년도에 고엽제 보상 소송이 있었는데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참전자에 해당되는 인원은 일정 수준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한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유독 한국만 그 보상에서 제외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협상을 하면서 전투수당보다는 한국군 현대화와 경제 개발에 대해서 많은 요청을 우리 정부가 했다는 것이 여러 문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파월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 만일 정부가 대미 협상에서 안보나 경제 지원을 포기하고 파월장병들에 대한 복지 이런 면에 주력을 했다고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반복이 되지만 이분들에 대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되었고, 지금은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이 파월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왜 특별보상법이 제정되어야 되느냐면 지금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참전 노병들의 명예 선양과 자부심을 고취해 줬을 때 노후생활에도 안정을 기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커 가는 신세대들에게 실증적 안보교육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태수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하태수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행정학과의 하태수 교수입니다.

저는 본래 정부조직 개편사를 연구하는 교수인데요, 박정희 정권 때 국방부 조직하고 상공부 조직의 변화를 연구하게 되다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박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가급적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옆의 신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참전유공자들이 76세시고요, 18만 9000명 정도 생존해 계신데 지금 87% 정도가 전상질환하고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계시고, 고엽제 피해자는 잘 아시겠지만 14만 그다음에 전쟁 트라우마 피해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에 참전명예수당으로 올해 1만 원 올라서 35만 원을 받게 되시는데요. 참고로 병장 월급이 60만 원 그리고 외국의 경우를 보면 한 200만 원 정도를 받으십니다.

그다음은 명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출된 법률안에 보면 ‘명예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예우보상금’으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보상금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지급되어야 할 전투수당이 지급 안 된 것을 지금 지급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채무 불이행을 채무 이행하는 개념으로 보는 건데요. 국가를 대상으로 배상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으니까 명예보상금으로 쓰자라는 취지인데 그것보다는 국가발전에 기여한 측면을 조금 더 인정해서 예우보상금으로,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특혜를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명칭을 예우보상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타당성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앞에서 계속 말씀해 주신 거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전용사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지요. 전투수당이 정확히 지급되지 않았더라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게 볼 수는 있겠지만 하여간 참전용사들의 주장은 그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인데요, 옆의 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총 67억 달러 정도 됩니다. 8년 동안 67억 달러를 직접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벌어들인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1970년 GNP로 보

면, 70년 한 해 GNP의 93.6%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의 93.6%가 아니라 GNP의 93.6%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중을 보시면 막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의 간접효과를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65년에 우리나라 전투부대가 파병이 되는데 가서 한 2~3년 잘 싸우시니까 중공이 북한에게 남한군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권고합니다, ‘남한에 가서 게릴라전을 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온 게 68년도에 김신조 일당이 내려와서 청와대 습격을 한 거고 그다음에 울진·삼척 지구에 간첩이 내려오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장공비라고 하는 게릴라들이 내려오게 되는 거지요.

당시 박정희 정권은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도와주다가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69년에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해서 한국을 방위선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돈 벌러 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미국을 도와줬다가 이렇게 됐으니, 미국을 믿었는데 우리를 안 도와주니 자주국방으로 나간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미군 철수가 1개 사단은 뺏고요, 그래서 6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줄었고요.

그래서 자주국방을 하려고 무기전용 공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당시 경제부총리가 차관을 얻어오는 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중화학공업화입니다. 그러니까 중화학공업화가 우리 경제발전 논리에 따라서 된 게 아니라 자주국방을 하려다 보니까 제철공업이 필요하고 제강공업이 필요하고 화학공업이 필요하고 이래서 중화학공업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월남전 참전이라는 게 우리나라 현대 경제발전에 엄청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간접적인 효과지만 이 효과가 지금까지 주목을 못 받은 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참전유공자분들께, 디테일한 것은 따져 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콘텍스트(context)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는 다른 발표자들께서도 말씀하신 외국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나—미국은 워낙 유명하니까—호주나 뉴질랜드를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보다는 명예 측면이 아니면 실질적인 경제적 측면 지원이 훨씬 잘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저런 나라들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뒤쳐졌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후대들을 위한 교훈 차원에서인데요,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마는 비슷한 비유는 될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때 보면 의병이 많았는데 병자호란 때는 의병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류성룡 영의정이 ‘전쟁 끝나면 면천을 시켜 주겠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노비였던 분들이 양반을 따라서 의병에 많이 참가했는데 전쟁 후에 선조께서 그것을 무효화시켰답니다. 그래서 병자호란 때는 의병이 거의 없었다는 게 주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보상이나 명예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됐을 때는 다음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과연 누가 열심히 참전을 하시려고 하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발표를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상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료 맨 끝에도 넣어 놨습니다만 의료급여 중위 40%, 2인 가족에 한 120만 원 정도입니다. 아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치료 차원에서 의료급여로 부부 2인으로 접근 하셔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엄청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지 않냐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홍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의 진술인들 발표를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떻게 그냥 무작위로……
먼저 안규백 위원님이 손을 들어 주셨네요.

○안규백 위원 저는 먼저 국방부 보건복지관 박길성 국장님께 질의 겸 답변을 요합니다.

1973년도에 우리가 철수를 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월남 참전용사에 대해서 보상금이 됐든 예수가 됐든 간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 공청회가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 오고 있지요.

그런데 반세기에 걸쳐서 참전용사들의 피맺힌 절규인데, 여러 가지 그 얘기가 허황된 얘기고 허황이면 단기간에 끝났지 계속 이어져 왔겠습니까? 오늘 절규적인 이런 얘기를 우리 국방부는 저는 굉장히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이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건처·기획재정부 또 보건복지부가 TF팀을 구성해서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또 월남 참전용사들의 대소 모임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해관계와 갈등이 사실 심각합니다, 여기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의 갈등도 조정해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 상태까지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그 파급효과까지 고려해서 TF팀을 구성…… 물론 당연히 여기 계신 연구하시는 학자님들이나 또 이해관계자인 참전 노병들도 같이 참여해서 결론을 낼 때가 됐다, 더 이상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나라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제가 월남 참전용사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월남 참전용사들도 이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내 주라, 힘이 분산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파병 장병에 대해 국가에서 이런 기여도를 고려하여 보상에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박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직생활에서 하나의 기념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국방부보건복지관 박길성 국방부 보건복지관 박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국방부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규백 위원 하십시오.

○국방부보건복지관 박길성 사실 월남전 참전군

인들의 국가를 위한 기여·희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대단히 공감합니다. 특히 브라운각서를 보면 월남전 파병으로 인해서 미 측에서 우리 한국군 현대화 등 군사적 지원 그다음에 차관 제공 등 경제적 지원 이런 것들을 했더라는 것은 명백히 확인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점도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시에 미지급한 전투근무수당을 가지고 진상 규명해서 그것을 다시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이 내용은 19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법안 발의가 됐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쳤지만 관련 부처 의견들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아서 결국 그때마다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가지고 또 논의를 하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되고 공감대 형성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아까 발표는 했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따라서 굳이 꼭 전투근무수당이라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다양한 보상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바로는 아까도 얘기되었지만 참전명예수당이 다른 여타 참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경제력 수준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이것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을 해 준다고 하면 공감대 형성도 훨씬 더 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6·25 참전자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나 기재부나 이런 데랑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TF를 만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규백 위원 지금 월남 참전용사들께서 70대 후반이고 고령에 접어드는데 이분들이 일생을 사시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시간적으로 지체할 시간이 없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도 드렸고 박 국장께서도 말씀했듯이 우리 국방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

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국방부는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관 부처하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부분의 어디 꼭지를 따야 되고 어떤 매듭을 지어야 되는가 또 국회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야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요소만 보면 계속 부정적인 요소만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하 교수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68년도에 올린 간첩 사건이라고 아주 무지무지한 이런 얘기가 있었고, 68년도 1월 21일 날 김신조의 청와대 습격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예비군 제도가 생기고 창설되고 여러 가지 안보에 대한 급박한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국가적인 현안들을 고려해 보고 했을 때 박 국장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오늘 패널로 나오신 다섯 분의 사제 전문가께서 그 내용을 충분히 담아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하고 TF팀을 구성해서 그때그때 우리 국방위에도 보고도 해 주고 이런 문제를 매듭짓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국방부보건의복지관 박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우선 발표하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먼저 박문언 위원님은 십자성 부대에 대한 것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박문언 거기 결론에도 나와 있는데 일단 이게 끝나기는 저희가 1월 26일 날 파리협정을 종료는 했지만 미군 같은 경우에는 북베트남이 계속 공격을 했었고 미군하고 어느 정도 무력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월 23일까지 모든 병력이 철수가 되었고 그 이후에 무력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십자성 작전이 최초의 어떤 성공적인 교민 철수 작전이었고 인도적 지원 작전이라는 측면에는 당연히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참전이라고 볼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십자성 부대에 대한 것도 파리협정에 따라서 월남전이 종료된 다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한다면 아마 정부 간의 외교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파병수당 전용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했었는데 이때에 대해서도 미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박문언** 일단 제가 전체 문서를 다 보지는 못해 가지고 지금 당장 이렇게 단언하는 말씀 드릴 수 없는데 이제까지 그냥 본 자료로는 충분히 이게 국가에서 전용했거나 아니면 축소했다는 여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명백하게 그런 어떤 문헌이라든지 증언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재조사가 필요한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기호 위원** 최용호 위원님, 최 박사님. 당시에 검토해서 보고하고 다 했지요?

○**진술인 최용호**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 당시에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지요?

○**진술인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한기호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진술인 최용호**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우방국에 지원한 금액을 그냥 지원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원하고 나서 결산 과정을 거칩니다. 그 내용을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주한미군사령부와 국방부 재정국이 매월 수작업으로 그때 1원 하나하나 계급별, 인원별 다 계산을 해 가지고 그 숫자를 더해서 결산을 한 자료가 지금 다 국방부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사를 확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전투수당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아까 보고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돈보다도 우리 국민인 파월 장병들의 안전을 더 우선시하는 과정에 협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진술인 최용호** 예.

○**한기호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어디에다 중점을 뒀느냐 하는 데에서 이것을 돈을 받아 내는 것보다도 안전에 더 중점을 뒀서 사실

은 미군들도 거기에 동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술인 최용호**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게 다시 논란되는 자체가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조사하시고 실제 하셨던 최 박사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확인됐고 당시에 공금이 유용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지요?

○**진술인 최용호**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또 우리 신종태 위원님.

지금 국방력 증강과 경제발전 지원 등에 해외 근무수당 인상을 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협상 당시에 주로 한국군 현대화나 그리고 한국에 대한 경제 지원 이게 주가 되었지 구체적으로 전투원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수당 이런 것은 크게 부각이 안 됐더라고요.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용호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당시에 미군이 준 공금은 우리 장병들한테 주는 것 외에 유용된 것이 없다고 당시에 결론을 냈어요. 그러나 지금 신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우 차원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좀 더 챙겨 줘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진술인 신종태** 예.

○**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재 위원님.

당시에 미국 정부에서 별도의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됩니까, 다른 분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진술인 이용재** 그때 당시의 미국 문헌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거기상에 표현되는 것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투근무급여금을 명칭의 혼란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은 좀 있지만 그것들이 정확하게 파월 장병들한테 이렇게 지급이 됐는지 이것은 한번 조사하는 것……

○**한기호 위원** 그래서 과거에 이미 벌써 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유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조사를 하고 확인하고 전부 했는데 최용호 박사님은 그 당시에 참가해서 전부 했는데 유용된 게 아니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전투수당을 지급했다 하는 말 자체가 이게 사실은 없는 얘기를 하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해법을 찾아야지, 그냥 우리도 다른 나라가 하나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월남전 참전은 대한민국의 역사상 최초의 해외 파병으로서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발전의 초석을 만든 것은 사실이고 이를 통해서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데 공훈을 세운 역사입니다. 우리 군이 월남전 참전하지 않았다면 한국에 주둔하는 미 2개 사단 병력이 한국을 떠나 월남전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안보에서도 또한 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월남전입니다.

제정안에 대해서 월남 참전군인의 희생과 기여에 부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충분히 저는 공감합니다. 다만 당시 정부가 전투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가정한 것과 관련해서 법제처의 법령 해석과 법원의 판결 결과, 국방부와 보훈처 등 관련 부처의 검토 결과, 국회 공청회 등 그간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해서 고려할 때, 저는 19대 국회 때도 이 공청회에 똑같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18대·19대·21대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뤘던 사람입니다. 당시 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전투근무수당을 다시 지급하는 것은 아마 국방부도 수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조금 전에도 밝히셨지만. 또 국가보훈 체계상 신체적 희생이 없던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6·25 참전유공자와 또한 한 번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25 참전은 3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어느 전쟁보다 참혹했습니다. 이 전쟁의 3년을 참전한 분들하고 전투수당을, 지금 명예수당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남에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해 준다고 했을 때 6·25 참전유공자들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형평성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훈대상자들 생활 실태조사한 거로 봐서는 저소득층 비율이 높고 또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차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6·25 참전군인의 보상과 월남 참전군인의 보상이 다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훈대상 체계하에서 기타 유공자들이 또 있습니다. 경찰과 또 여기에 관련된 보훈 유공자들인데 이분들과도 형평성을 또 고려해야 됩니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 형식이 아닌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방향의 형태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 위원님.

○김민기 위원 국방부 국장님 좀 발언적으로 나오시지요.

국장님, 보건복지관이라고요?

○국방부보건복지관 박길성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면 국방위의 법안심사소위에 들어오십니까?

○국방부보건복지관 박길성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이거요?

○국방부보건복지관 박길성 저희 관련된 안건이 있을 때는 들어옵니다.

○김민기 위원 혹시 20대나 19대 때 이 업무를 맡았습니까?

○국방부보건복지관 박길성 아닙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법안심사소위에 안 가 보신 거지요?

○국방부보건복지관 박길성 예, 이것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김민기 위원 그렇지요, 논의가 안 됐으니까요. 즉 법안소위, 그러니까 법안이 심사될 때는 이 토론의 장에는 안 나가 보신 거지요?

○국방부보건복지관 박길성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단체에서 전투근무수당을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국방부보건복지관 박길성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그게 여러 가지 지금까지 논란이 많이 있었고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으니 다른 보상방안을, 현실적인 보상방안을 찾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은 혹시 들어 보셨나요?

○국방부보건복지관 박길성 저희가 다 의견 수렴을 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오전에도 거기 들어서 왔고 저희가 대략적인 어떤 국방부의 입장은,

의견은 좀 드렸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즉 뭐냐 하면 예우보상금 혹은 명예보상금 아니면 옛날에 받았어야 됐다고 여겼던, 국가한테 떼먹혔다고 여겼던 전투근무수당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어떤 형태의 말씀을 주로 하시나요?

○**국방부보건복지관 박길성** 저희가 현장에서 들은 의견을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제가 들은 얘기는 참전명예수당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전투근무수당을 반드시 줘야지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겠단다고 했었습니다.

○**김민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19대·20대·21대에 이것이 계속 나와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됐나 이렇게 봤더니 지금 보건복지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전투근무수당을 미국에서 한국이 받아서 우리한테는 안 주고 다른 데 쓴 것 아닌가, 그러니 그것을 되돌려 다오’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얘기는 없었다. 즉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해외 근무수당과 전투수당에 대한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떼먹은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이 되니까 이게 쳇바퀴 돌 듯이 돌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다섯 분의 박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다 긍정적입니다. 방법에 차이는 좀 있지만 다 긍정적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면 그 특별법에 의해서 보상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길게 끌리고 있지요?

여기에 저는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듣습니다.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는 ‘형평성’ 그다음에 ‘시기상조’ 이런어들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형평성을 꺼내기 시작하고 시기상조를 꺼내기 시작을 하면 이것을 안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형평성과 시기상조가 가끔씩 나오고 있어요.

저는요, 이 시기상조는 지금 얘기할 때가 가장 늦은 거예요. 빨리 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형평성이라는 것은요, 6·25 참전용사 안

됐으면 그것도 해야지요. 월남 참전용사 안 됐으면 그것도 해야지요. 저는 오늘 공청회를 보면서 오늘 공청회가 제정법의 절차의 한 과정이기는 합시다만 매우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19대·20대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국방위가 아니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으로 오늘 공청회를 보는데요, 의견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그냥 특별법, 지금 존경하는 설훈 의원님께서 내 주신 법 그냥 통과가 돼서 그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월남 참전의 덕분으로, 그분들의 덕분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을 잡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것 받아들일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 그래서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오늘 나와 주신 다섯 분의 박사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홍철** 김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설훈 위원** 오늘 다섯 분의 박사님들 말씀을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이제 공청회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새로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만들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공청회를 거치는 건데.

이 법은 사실은 한기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래전부터 묵은 법입니다. 새롭게 정리하는 법이 아니고 18대부터 내려오던 법인데 정리를 못 하고 이제 새롭게 만들자는 입장에서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세 번 했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법안입니다.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에 따른 국가가 보훈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훈이 제대로 될 때 국가를 지키려는 의지가 나오는 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건 상식입니다.

과연 우리가 베트남전을 치르면서 제대로 했느냐, 보훈에 대한 과정과 내용이 제대로 됐느냐……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게 굉장히

히 많은 사람들, 직접 전투에 참여했던 분들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허구냐? 허구라고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종지부를 찍고 정리를 하자,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위 국가로 들어갔습니다. 민주주의도 이만큼 고양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위치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베트남전 참전국들 중에서 호주의 예도 들고 뉴질랜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나라보다 우리가 훨씬 나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되고 있었느냐? 많은 토론도 했지만 결론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고 그런 재정적 힘도 있고 국민들도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공청회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오늘 여기에 참석한 우리들의 사명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해외파견수당은 있었지만 전투수당이 없었던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해외파견수당 속에 전투수당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의 주장일 따름이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투수당을 달라, 지금 안 한 전투수당을 내놓아라 이 주장은 그건 상식으로 통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논의가 됐든지 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면 전투는 했는데 5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고 부상을 당한 사람도 1만 명이 넘습니다. 32만 명이 전투에 종사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전투수당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 주겠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건 정부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국회도 정부의 일원 중의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 부끄럽다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래된 이 숙제를 이제는 종지부를 찍고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오늘 다섯 분의 박사님들께서 정확하게 처방을 내놓으셨다 생각합니다.

아까 안규백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관계부처가 같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법안을 통과시켜야, 법이 만들어져야 태스크포스도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문제 해결도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따로 있지 않고 참석한 위원들이 대부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우리 국방위에서 법안으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서 법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절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일이 제가 다 질문 않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거의 상식 수준으로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 없이 그냥 제 의견은 이걸로 정리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바라건대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저는 법안소위 위원이 아님니다마는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이 법을 통과시켜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법이 되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것이 참전한 용사들의 희망사항일 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도 그게 상식에 맞는 거다 이렇게 말씀할 것이라고 봐서 기꺼이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법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홍철 특별히 진술인들께 답변 구하시시는 건 아니지요?

○설훈 위원 예.

○위원장 민홍철 오늘 다섯 분의 박사님들께서 전문 분야별로 이렇게 진술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큰 역사적인 변곡점이 두 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6·25 전쟁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월남전 파병이지요. 그것도 거의 10년 가까이 한 건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와 있고 G7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에 대한 국가 위치에 맞는 그런 예우는 반드시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국가가, 정부가 직권으로 찾아서 해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월남전 참전자들에 대한 전투근무수당 문제가 부분에 대해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여쭙보겠습니다.

최용호 박사님께서서 지난번 참여정부 때 실질적으로는 최초로 조사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진술인 최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저도 그 자료들 많이 봤어요. 특히 박사님께서도 적시를 해 놓으셨습시다마는 그 당시 법제처의 법적 해석, 유권해석 저는 뭐랄까, 과연 그 해석이 합당한 해석이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요.

왜냐하면 그 당시 법제처 해석이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헌법에 의한 전시·사변이 아니었다’ 그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군인보수법에 법적 근거가 없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헌법에 의한 전시·사변으로 우리가 해석을 안 하게 되면, 월남전에서 전투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게 국가유공자 예우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금 전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와 상충이 돼요. 전투행위를, 전쟁행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전사가 됩니까?

그런데 전투근무수당의 법적 근거를 안 주기 위해서 월남전은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전시·사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헌법은 ‘등’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시·사변 등……

그래서 유권해석을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는 매우 합당하지 않다. 그 해석이 전부 다 사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우리 박사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과연 전투근무수당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법제처의, 정부의 유권해석 그걸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백한 입법부작위도 해당이 된다’, 입법부작위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가 ‘17조 시행령 왜 정하지 않았느냐?’, ‘비상대비법으로 만들어왔다. 대외비이다’…… 이 해석도, 이 발언도 저는 좀 이상해요.

그래서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안내를 하지요, ‘헌법소원의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박사님 동의하십니까?

○진술인 최용호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 발표드린 바와 같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종태 교수님, 고엽제 관련된 경우도 우리가 좀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진술인 신종태 예.

○위원장 민홍철 그때 우리가 소송 당사자로서 참가를 안 하는 바람에 또 나름대로 기관력이 벌써 형성이 되어 버렸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고엽제에 해당 되신 분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진술인 신종태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법적으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지.

○위원장 민홍철 그러세요?

○진술인 신종태 예.

○위원장 민홍철 박문언 박사님 법률전문가이신데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진술인 박문언 검토를 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소송 형태가 미국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내용도 잘 몰라 가지고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그리고 국방부의 박길성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아까 형평성의 문제가 논의가 됐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때 6·25 전쟁과 월남파병 전사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6·25 전쟁의 전사자, 정부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사자가 13만 7000명인가요?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보건복지관 박길성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민홍철 하여튼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중에서 유가족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들이 있거나 한 분들이 3만 7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겠습니까? 그 수당의 종류는 여러 가지 분류해 가지고, 제적유자

년에 대한 수당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입법 조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보건복지관 박길성 예.

○위원장 민홍철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현재 화살머리고지라든지 백마고지라든지 다부동전투 격전지라든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유해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6·25 전사자들에 대한 사망보상금 이게 일률적으로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지급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법원에 소송을 해야만이 그것도 1000만 원을, 환율을 계산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보건복지관 박길성 예.

○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니다. 아까 월남전 전투군무수당이나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6·25 전사자들에 대한 사망보상금을 유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국가가 다 찾아서 지급을 해 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국방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방부보건복지관 박길성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홍철 6·25하고 월남전이 굉장히 우리 현대사, 대한민국의 큰 역사의 변곡점이고 발전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성장하는 데 큰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와 걸맞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정부가 직권조사를 해서라도 해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25 전사자들에 대한 사망보상금도 한번 국방부에서 이제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가족들이 다 소송을 제기해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월남전 전투군무수당 저는 분명히 이 문제가, 저도 법률을 공부하고 검토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의 입법부작위다 그렇게 봅니다.

아까 미국의 브라운각서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해외파병수당을 얼마를 줘서, 아까 이용재 박사님 인가요, 해외파병수당과 전투군무수당이 혼용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액수는 줬다고 어떻게 해

석을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국내법상의 63년도의 군인보수법 자체가 현재까지도 입법부작위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보건복지관 박길성 사실 월남전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외파견군무수당하고 전투군무수당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저희는 전투군무수당은 국내의 국가비상사태에 한정해서 준다는 개념으로 입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이런 법체계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전투군무수당은 국내의 비상사태 시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의 사례는 어떻게 되냐? 해외파병의 경우는 지금 해외파견군무수당을 차등해서 지급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파견 지역의 어떤 위험도, 즉 전쟁 지역이나 아니냐 그다음에 임무가 전투 임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등급을 각각 나눠 가지고 그 등급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해외파견군무수당이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위험수당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법체계에 안 맞다는 것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PKO 활동에 있어서 전투위험지역에 가서 전투 행위가 있었어요. 그 전투 행위를 하다가 안타깝게도 순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줘니까? 다른 국내법에 의하면 그걸 단순 순직으로 안 하고 전사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예우를 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전쟁인데 법적으로는 전쟁이 아니다 이런 모순적인 해석이 돼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게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느냐? 저는 일관된 해석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 해석이 과연 맞는지 저는 좀 의문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또 정부의 입장이나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 이거지요.

그러면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강대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식 위원 저는 오늘 2개 위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공청회에서 다섯 분의 박사님들 이야기를 다 듣지는 못하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한두 가지만 좀 여쭙보겠습니다.

월남전 참전 군인들만이 아니고 6·25 때 소년 소녀병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국가에 대해 희생이라든지 공헌했던 이런 분들한테는 합당한 예우와 보상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용재 박사님께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국내외 정부 기관의 비밀 문건들이 공개가 되고 또 관련 자료들이 계속 발견된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들에 대해서 혹시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보훈처라든지 정부 부처에서 답변은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진술인 이용재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은 이렇게 듣지는 못했구요. 이런 연구를 통해서 관련된 참고문헌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동안 변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이렇게 확인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강대식 위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진술인 이용재 예.

○강대식 위원 혹시 국방부 보건복지관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방부보건복지관 박길성 저희도 여러 가지 관련 의혹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원 등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상당 부분은 오해에서 유발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는 사실이 아예 아닌 경우도 있고 또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근거가 약간 좀 약하고 확인할 방법이 없는 그런 사항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박문언 박사님께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진술 요지에서 보면 ‘다른 보훈 대상자와의 형평에 반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진술인 박문언 구체적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그 차이를 말씀드린 거고요. 기준이 있으면 하향 평준화가 있고 상향 평준화가 있는데 하향 평준화를 시켜서 다른 참전 유공자나 그런 분들도 같이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형평성을 얘기한 거고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같이 상향시켜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대식 위원 물론 모든 면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좋겠지요. 좋겠는데, 다른 보

훈 대상자들하고 동등하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딱 이것만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홍철 다 하셨어요?

○강대식 위원 예.

○위원장 민홍철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실제로 제가 국방위원회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지난 과정들을 보면 이 법을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벽에 부딪히는 게 법제처에서 우선 문제를 삼습니다, 옛날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분들한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드리겠다 하는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추진해야 되고 그러려면 정말로 필요한, 우리가 예산만 태우면 될 수 있는 이런 일들마저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6·25 참전 유자녀 또 강대식 위원님이 하신 소년소녀병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생존자들이 많이 남지 않으신 분들 이런 데 대해서는 그들이 특별법이 아니라도 ‘저 정도면 됐어’ 이렇게 파격적으로 해 드리면 될 것을 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아까도 ‘얼마를 해 드리는 게 적정하나’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을 만드는 게 지난하고 힘들다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풀면 되지요. 왜 안 푸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계속 논란만 갖게 하는 것은 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35만 원인가요, 월 드리는 게? 아니, 파격적으로 드려 보세요. 그러면 왜 이걸 가지고 자꾸 논의를 하겠어요. 법을 만드는 게 힘들면 다른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은 하려고 생각을 아예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국방부가 내년에는 파격적으로 ‘얼마쯤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서 한번 실제로 예산을 태워 보세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그 예산을 주도록 만들면……

이게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쉬운 방법 놓고 왜 어려운 방법을 자꾸 논의하느냐 이것이지. 쉬운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할 수 있도록 해서 한이 맺히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홍철 설훈 위원님.

○**설훈 위원**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훈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들으면 이게 다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도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또 일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하나하나 하되 우선 지금 문제 되고 있는 것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은 월남전 관련 내용입니다. 이것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안을 통과시켜서 본회의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임무이기 때문에 이걸 해내고 그리고 뒤에 있는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작업 아닌가, 작업의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청회는 월남전 전투수당에 관한 공청회입니다. 그리고 진실 규명을 위한 공청회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는 일정 정도의 소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문제를 확대시켜 나가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 얘기는 오늘 일로 해내고 그리고 한기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일은 차후에 우리 숙제로 남겨 뒀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고엽제 문제도 제대로 정리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해야 할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투수당 문제가 정리된다면 고엽제 문제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하고 한국전 참전용사 문제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또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청회의 목적에 맞게끔 일을 풀어 나가는 것이 오늘 해야 할 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또 있으신가요?

○**김민기 위원** 의사진행발언요.

○**위원장 민홍철** 의사진행발언요?

○**김민기 위원** 오늘 참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것도 중요하지만 급한 것도 중요하더라는 게 저의 생각이구요.

오늘 신종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1984년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국제적인 보상 소송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모르고 참여를 못 했다는 얘기 있거든요.

○**진술인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모르고 참여를 못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소송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국방위원회가 어떤 형태로든 연구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철저히 다시 검토하는 것을 우리 국방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민홍철** 그 내용은 법적인 문제이고요. 그래서 포함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께 제가 한번 검토 요청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는 이렇게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귀한 시간을 내 주시고 또 오늘 오랫동안 현안보고 때문에 많이 기다려 주신 최용호 박사님 그다음에 이용재 박사님, 박문언 박사님 그리고 신종태 교수님 그리고 하태수 교수님, 다섯 분의 진술인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공청회를 통해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강 대 식	기 동 민	김 민 기	김 병 기
김 병 주	김 진 표	민 홍 철	설 훈
성 일 중	안 규 백	이 상 직	조 명 희
하 태 경	한 기 호		

○청가 위원(3인)

신 원 식	윤 호 중	홍 영 표
-------	-------	-------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정 성 희
전 문 위 원	조 문 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	관	서	욱
기	획	조	정
실	장	한	현
수			
국	방	정	책
실	장	김	만
기	획	관	리
관			
법	무	관	리
관			
보	건	복	지
관			

방위사업청

청	장	강	은
기	획	조	정
관			

합동참모본부

의	장	원	인
작	전	본	부
장			
육	군	참	모
차			
장			
해	군	참	모
차			
장			
공	군	참	모
차			
장			
해	병	대	부
사			
령			
관			

○출석 진술인

박문연(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신종태(통일안보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용재(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
 최용호(前(사)전쟁과평화연구소 소장)
 하태수(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보고사항】

○의안 회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9. 양금희 · 김형동 · 서일준 · 윤창현 · 이영 · 이주환 · 임이자 · 전봉민 · 지성호 · 태영호 의원 발의)

11월 30일 회부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0. 성일종 · 김기현 · 김희곤 · 박덕흠 · 박진 · 신원식 · 이태규 · 임이자 · 조명희 · 지성호 의원 발의)

12월 1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2. 8. 조명희 · 추경호 · 홍문표 · 박덕흠 · 성일종 · 하영제 · 김성원 · 조정태 · 김석기 · 박진 의원 발의)

12월 9일 회부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

(2021. 12. 9. 조태용 · 추경호 · 배현진 · 송언석 · 이영 · 조명희 · 윤주경 · 박진 · 윤두현 · 태영호 · 주호영 · 지성호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21. 12. 9. 홍영표 · 장철민 · 김경협 · 김종민 · 김정호 · 안규백 · 김진표 · 오영환 · 신동근 · 고영인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0일 회부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3. 김진표 · 박성준 · 고용진 · 정일영 · 신정훈 · 김병기 · 홍영표 · 김병주 · 천준호 · 윤영찬 · 안규백 의원 발의)

12월 14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5. 서삼석 · 김승남 · 김승원 · 김영배 · 김철민 · 박정 · 박홍근 · 서동용 · 소병철 · 송재호 · 신영대 · 양기대 · 오영환 · 윤재갑 · 윤준병 · 이개호 · 이수진(비) · 장경태 · 주철현 의원 발의)

12월 16일 회부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6. 성일종 · 조명희 · 양금희 · 이명수 · 이주환 · 김태흠 · 한무경 · 조해진 · 이양수 · 권성동 · 박진 · 유의동 · 주호영 · 윤영석 · 이채익 · 박형수 · 홍문표 · 윤재갑 · 강대식 · 이달곤 · 송언석 · 서병수 · 한기호 의원 발의)

12월 17일 회부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21. 12. 21. 이채익 · 류성걸 · 하태경 · 서병수 · 김형동 · 강민국 · 강대식 · 주호영 · 성일종 · 정운천 의원 발의)

12월 22일 회부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2. 22. 김병주 · 김병기 · 이병훈 · 이형석 · 안규백 · 오영환 · 김진표 · 홍영표 · 전용기 · 전해숙 · 설훈 의원 발의)

12월 23일 회부됨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2. 23. 강대식 · 유경준 · 주호영 · 조수진 ·

권영세 · 신원식 · 유의동 · 백종현 · 김은혜 ·
金炳旭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2. 23. 정부 제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2. 23. 강대식 · 권영세 · 金炳旭 · 김은혜 ·
백종현 · 신원식 · 유경준 · 유의동 · 이채익 ·
조수진 · 주호영 · 허은아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24일 회부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1. 12. 28. 박성준 · 송재호 · 이상현 · 김진표 ·
강득구 · 김승원 · 서영교 · 홍성국 · 김희재 ·
한준호 · 오영환 의원 발의)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 방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12월 29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2. 31. 강대식 · 권영세 · 金炳旭 · 김웅 ·
김은혜 · 백종현 · 유경준 · 유의동 · 윤두현 ·
이용호 · 조수진 · 추경호 의원 발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

(2021. 12. 31. 김민기 · 김영진 · 기동민 · 조승래 ·
정필모 · 서삼석 · 김병기 · 설훈 · 김진표 ·
전재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2022년 1월 3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 신원식 · 김희곤 · 윤두현 · 주호영 ·
이철규 · 김선교 · 정희용 · 김웅 · 金炳旭 ·
김석기 · 한무경 · 이명수 · 최춘식 · 지성호 ·
강민국 · 강대식 · 성일중 · 조명희 · 권명호 ·
강기윤 · 박진 · 안병길 · 하태경 · 양금희 ·
조태용 · 최승재 · 서일준 · 김예지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 김민석 · 강득구 · 강병원 · 고영인 ·
김정호 · 박성준 · 양정숙 · 오영환 · 이광재 ·
최혜영 · 홍정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
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
됨

사이버보안 기본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2021. 12. 2. 윤영찬 · 강병원 · 김상희 · 김정호 ·
박홍근 · 변재일 · 오영환 · 오영훈 · 이용빈 ·

이장섭 · 전해숙 · 정필모 의원 발의)

12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5. 서삼석 · 김승남 · 김승원 · 김영배 ·
김철민 · 박정 · 박홍근 · 서동용 · 소병철 ·
송재호 · 신영대 · 양기대 · 오영환 · 윤재갑 ·
윤준병 · 이개호 · 이수진(비) · 장경태 · 주철현
의원 발의)

12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은 의원 대표 발의)

(2021. 12. 30. 박광은 · 이장섭 · 김종민 · 박성준 ·
이병훈 · 김영배 · 양향자 · 박주민 · 김남국 ·
전용기 · 신영대 의원 발의)

12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2. 29. 주호영 · 金炳旭 · 정운천 · 김성원 ·
박진 · 임이자 · 한무경 · 김석기 · 권명호 · 강
대식 의원 발의)

2022년 1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